

行政學碩士 學位論文

FTA 締結이 韓國 水産業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Policy Implications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isheries Sector

2005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産業大學院

海事行政學科

金斗奉

行政學碩士 學位論文

FTA 締結이 韓國 水産業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Policy Implications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isheries Sector

指導教授：崔 成 日

이 論文을 行政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海事産業大學院

海事行政學科

金 斗 奉

金斗奉의 行政學碩士 學位論文을 認準함

2005年 6月 日

主 審 行政學 博士 姜 閔 鎬 ㉠

副 審 行政學 博士 姜 恩 淑 ㉠

委 員 經濟學 博士 崔 成 日 ㉠

Policy Implications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 on the Fisheries Sector

Kim, Du-Bong

*Department of Maritime Affair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With increase in the quantity of world trade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the pattern of world trade negotiation has changes formed into multilateral form by WTO.

However, this multilateral negotiation has many difficulties in meeting various needs of member countries. As a result, its progress is somewhat in the stagnant status.

Under this circumstance, it comes prevalent that each country contracts FTAs with interested countries in order to maximize economic welfares by increasing the quantity of trade. Consequently, most countries who are members in WTO are currently contracting FTAs.

Because the economy of Korea is greatly dependent upon exports of industrial goods, it is inevitable that Korea try to make use of expected benefits of FTA and to positively contract FTAs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in spite of its usefulness, FTAs with other countries

especially southeast countries were not contracted much. It was mainly because circumstances in each country were different and mainly the persons concerned were in opposition to contracting FTAs for the protection of the first industry such as agriculture and fisheries. Nevertheless, Korea-Chile FTA was initially contracted in April 1, 2004.

Following to the Korea-Chile FTA, Korea is trying to contract FTAs with many interested countries. If FTAs are contracted, the industries which are competitive in the markets would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contrary, the others that are uncompetitive would lose market shares. Especially,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he fishing industry would have negative impacts from contracting FTAs.

The economy of fishing industry in Korea becomes worse because the fishing grounds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by a EEZ scheme and the fish stocks have declined. Furthermore, Korea initially is having recently a deficit in fisheries trade.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estimate impacts of FTAs on the fishing industry. As the scope of the study, the impact of the Korea-Chile FTA on the fishing industry was evaluated. In addition, the potential impacts of FTAs with Singapore, Japan, China, ASEAN, EFT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were also analyzed. Based on results of analyses, some way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were considered.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와 구성	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방법	5
제2장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제1절 :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1. WTO 체제 출범	11
2. FTA의 세계적 현황	15
3. WTO와 FTA와의 관계	19
제2절 : FTA체제와 수산물 시장접근	
1. FTA체제와 수산물 교역 변화	22
2. 주요 FTA에서의 수산물 시장접근	24
제3장 수산업 현황과 FTA 영향	
제1절 : 국내·외 수산업 현황	
1. 세계의 수산업	27
2. 한국의 수산업	35
제2절 :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수산업의 영향	
1. 한·칠레 FTA 의의와 경과	43
2. 한·칠레 FTA 수산부문 내용	45
3. 한·칠레 FTA 발효후 교역동향	51
4. 한·칠레 FTA 수산부문 영향 및 시사점	54
제3절 : 추진중인 FTA에서의 수산부문 협상동향	
1. 아시아지역	55
2. 유럽지역	74
3. 미주지역	79
제4장 FTA 체결에 따른 한국의 수산부문 대응방안	
제1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주요 쟁점	90
제2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93
제5장 결론	

[표 목차]

- <표-01>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양허비율 및 평균 양허세율
- <표-02> GATT/WTO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 <표-03> 무역협정의 접근방법
- <표-04> 무역협정의 유형
- <표-05> 무역협정의 통보현황
- <표-06> 세계 수산물 생산실적
- <표-07> 세계 수산물 소비동향
- <표-08> 세계 수산물 수출실적
- <표-09> 세계 수산물 수입실적
- <표-10> 수산물 수출입동향 총괄(2004.6월말 기준)
- <표-11>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표-12>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증감 현황
- <표-13> 주요 수산물 국가별 수입 현황
- <표-14> 한·칠레 FTA 협상일지
- <표-15> 한·칠레 FTA 수산물 품목별 양허안
- <표-16> 한·칠레 수산물 교역현황
- <표-17> 한·칠레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
- <표-18> 칠레산 주요 수산물 양허내용과 연도별 수입현황
- <표-19> 칠레산 어분 수출입 실적
- <표-20> 칠레산 정어리 수출입 실적
- <표-21> 칠레산 홍어 수출입 실적
- <표-22> 한·칠레 FTA 발효후 양국간 교역현황
- <표-23> 한·칠레 FTA 체결이후 양국간 수출입 현황
- <표-24> FTA 발효후 대칠레 수출입 증가율
- <표-25> 한·칠레 FTA 체결후 농수축산물 수입동향
- <표-26> 칠레산 수산물 수입동향
- <표-27> 한·싱가포르 FTA 협상일지
- <표-28> 한·싱가포르 주요 수산물 품목별 교역 현황(2003년 기준)
- <표-29> 한·싱/한·칠레 FTA 수산물 품목별 양허 현황
- <표-30> 한·ASEAN FTA 협상일지
- <표-31> 한·ASEAN 수산물 수출입 현황
- <표-32> 한·일 FTA 협상일지

- <표-33> 대일본 수산물 교역현황
- <표-34> 한-일 수산물 주요품목별 수출입현황(2004. 11월말)
- <표-35>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 비중
- <표-36>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입 비중
- <표-37> 한-중 FTA 협상일지
- <표-38> 한국의 국가별 수산물 무역현황
- <표-39> 대중국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 <표-40> 어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정도
- <표-41> 근해어업 업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수준
- <표-42> 한-EFTA FTA 협상일지
- <표-43> 한-EFTA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규모
- <표-44> 한-EFTA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2003년 기준)
- <표-45> 한-미 FTA 추진일지
- <표-46> 한국의 대미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 <표-47> 한국의 대미국 수산물 수출입 상위품목(2003년 기준)
- <표-48> 한-캐나다 FTA 협상일지
- <표-49> 한-캐나다 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 <표-50> 한-캐나다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
- <표-51> 한-멕시코 FTA 협상일지
- <표-52> 한-멕시코 수산물 교역현황
- <표-53> 한-멕시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3년 기준)
- <표-54> FTA 추진 대상국가별 수산부문 예상 파급효과
- <표-55> 외국의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시행사례
- <표-56> 수산업 구조조정 수단의 장단점
- <표-57> 휴어제 도입시 고려사항

그림 목차

- <그림-1> 무역협정 체결 추이
- <그림-2>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추이
- <그림-3>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량 지수 변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정보통신과학기술과 물류운송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세계는 과거에 없었던 국가간, 지역간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며, 세계의 무역 질서는 다자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함께 특정국가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도 함께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금까지 국가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지역간 또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그 동안 FTA 확산에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ASEAN+3(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FTA 추진을 위한 연구와 방안이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일본이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데 이어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ASEAN과 경제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FTA 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ASEAN+3회의에서 ASEAN과 2010~2015년까지 FTA를 맺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한·중·일은 FTA 체결을 목표로 FTA 체결에 따른 대응방안도 3국 공동 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연구하기로 하는 등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향후 동아시아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창설, 즉 EU나 NAFTA와 같은 거대경제권의 탄생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이미 남미의 수산대국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

르와는 가서명 상태에 있으며, 한·일간에는 FTA 추진을 위해 양국간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그 이외에도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EFTA 등 전세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국가간 FTA의 체결이 해당 당사국의 모든 산업에 긍정적인 이익을 과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정체결의 당사국은 자국의 산업적·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국의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인 면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부문 전반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여러 업종이 동이어장에서 동이어종을 생산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FTA 체결은 기술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일부 업종에게는 커다란 변화를 강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FTA 체결이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통상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산부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서해를 두고 인접해 있으며 어장과 어종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생산단가를 무기로 하여 저가의 대량적 물량공세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추세는 쉽게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수산부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시장으로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국익을 위한 경제협력의 국가적 무역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건대 우리나라의 21세기 화두는 FTA와 같은 국제 무역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국익은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장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최대의 국가핵심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체결된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와의 영향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인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1차산업의 특정한 분야인 수산부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연구하였으며, 아울러 FTA 추진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부문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번 한·칠레 FTA 체결 1년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공과 실을 정확히 알리고, 국민은 FTA 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의 일부 취약산업의 피해에 대한 부풀리기나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21세기 세계무역환경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한층 필요하리라고 판단되며 본 논문의 목적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와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경우 수산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세계의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수산부문에 대한 사례분석, 국가별 수산업 현황, 수산업 교역구조, 국가별 수산업의 경쟁관계, 수산업시장 개방실태, 협정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의 수산부문 전반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을 본 연구의 범위 및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선 FTA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논리적인 이론 틀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된 관련분야의 문헌조사를 통해서 국제무역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GATT체제 이후 WTO의 다자체제와 FTA의 양자체제공존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 배경과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등의 주변상황을 고찰하여 현행의 WTO와 FTA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하였다.

국내적으로 범정부적인 그간의 협상자료와 인용된 통계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된 국가별 수산부문 현황과 수산물 교역구조, 경쟁력 그리고 각국의 수산물 시장개방 실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수산부문의 전반에 대한 기반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세계무역환경과 FTA 체결로 인한 수산부문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국제무역환경변화와 FTA 확산에 따르는 배경과 현황등을 언급하였고, 제3장에서는 국내외의 수산업 현황과 FTA 영향, 그리고 제4장에서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제5장 결론으로 마무리 하였다. 각 장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목적과 배경, 연구범위, 그리고 논문구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먼저 연구목적에 있어서는 급속한 FTA 확산추세의 국제무역 환경속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언급하며, 연구목적의 시의적절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FTA확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역사적으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그 확산배경과 과정, 그리고 현재상황을 적시하였다. 세부적으로 FTA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그리고 WTO와 FTA에 대한 관계를 짚어 봄으로써 세계무역 전개과정의 이해를 도모코자 하였다.

또한 FTA의 세계무역환경에서 수산물 교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주요 FTA의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FTA 확산과 세계 수산업 변화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데, 먼저 전세계적으로 수산물의 현황, 생산량과 교역량을 고찰하였고, 주요 FTA에서 수산업의 변화사례를 열거하였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중국의 급성장인데 세계 수산물 수출입 시장에서 물량과 금액상으로 그 비중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실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FTA 체결에서의 수산부문에 대한 경쟁력과 위상을 비교하여 현재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FTA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부문의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중 연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제적으로 보면, 그 상황이 열위에 있는 산업으로서 보호장치가 없는 급속한 개방은 많은 문제점이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제5장에는 결론으로서 앞에서 서술하였던 FTA 관련내용 전반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방법

1. 선행연구의 검토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주요거점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 칠레와의 FTA 체결을 추진키로 한 이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협정체결을 위해서 동시다발적인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관련연구는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외교통상부 및 각 부처와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산업별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으나 국내외적인 여러 사정으로 성과는 미흡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국간 FTA 체결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및 협상전

략, FTA 체결 이후의 정책방향 등은 FTA 체결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구조 및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국에 따라 차별되는 지속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그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협상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도 이와 관련하여서 수행하였는 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세계무역환경은 1, 2차 대전 등, 복잡한 원인이 상호작용하여 변화해 왔다. 정인교(2001)¹⁾는 FTA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체결에 따른 이해, 그리고 국익은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먼저, FTA에 대한 확산이유에 대해서 ‘보험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WTO체제의 다자주의에 한계를 느끼고 만약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정책’ 차원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로서 바그와티(Bhagati)는 1990년대에 지역적인 FTA 체결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동안 다자체제의 최대 지지자였던 미국이 다자체제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주장으로서 볼드윈(Baldwin)은 유럽지역의 경제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론하면서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는 현상을 도미노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즉 유럽지역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단일시장의 설립을 서두르자 비회원국들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게 된 이유로서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방정책을 유지해야 할 현실적 요구, 세계적 확산추세에 대응할 필요성 제기,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와 국내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에 유리한 측면, 정치적 동반자라는 국제정치적인 효과 등을 거론하고 있다.

1)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이다’ 경제개발바로알기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FTA 연구시리즈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이경희(2000)²⁾는 한국의 첫 FTA 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칠레는 원부자재 위주의 수출을 함으로써 산업구조가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이다. 또한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 및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를 체결하여 지역거점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은 칠레의 FTA 체결경험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칠레는 농산물 수출국가이긴 하나 주로 일부 과일류에만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산업인 우리나라의 1차산업 농업, 수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으며, 더욱이 칠레가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희망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칠레 FTA 체결함으로써 얻는 효과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연간 후생수준이 상당히 증가하고,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구리 및 구리 가공제품 등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취약산업인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상 핵심이슈이기 때문에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유화의 예외로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인교, 조용균(2003)³⁾에서 다른 형태의 동아시아내 FTA 논의의 계기와 마찬가지로 한중일 FTA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03년에는 3국간 FTA 거시경제적 효과 및 한·중·일 FTA에 대한 업계 입장조사와 2004년 각국별 산업영향의 심층분석 등의 연구를 해오고 있다.

한·중·일 FTA 추진은 다른 FTA와는 달리 현재에도 많은 분야에서 관련하여 상호이익을 위하여 협력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3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보다 많은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연구 0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FTA 협동연구시리즈 03-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동 FTA는 우리나라의 동북아시아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상호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보여진다.

손찬현, 윤진나, 임효성(2001)⁴⁾은 FTA에 대한 추진의 필요성으로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국내 산업구조의 세계화, 선진화,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경제적 우방의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양국간의 산업 및 무역구조, 비관세장벽 현황, 산업별 영향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와 함께 산업별 비교우위, 무역특화현황 등의 부문별 분석과 더불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효과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수산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일단은 경합과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우위 품목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측면에서는 미국의 평균관세가 낮아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무역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미국은 거리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산 품목과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과의 차이로 수출 및 수입품목으로 주로 가공품 및 냉동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일 FTA에서의 수산부문에 대한 경쟁에서는 우리나라가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비중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평균관세가 낮아 무역창출 효과보다는 무역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간의 FTA에서는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활어 등 극히 제한된 일부에서는 대등하거나 경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등의 제한조치가 철폐되었을 경우, 중국으로부터 국내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활·선어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

4)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FTA 정책자료 01-01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상되며, 중국은 냉동, 냉장, 활어수송 기술의 진전에 따라 국내시장 및 일본시장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잠식,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홍성걸(2001)⁵⁾은 ‘한·중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동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서 상호수요가 유사한 상황과 가격구조에서 월등히 저렴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는 바다와 연결되는 지근거리에 있어 동일한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경쟁적 어획으로 인해 과도한 남획과 어로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 협약에 근거한 신어업질서의 구축을 위한 상호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물 교역분야에서도 상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긴요한 상황이며, 수산부문의 기술협력방안에 대하여도 양국 전문가들의 노력 또한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선행연구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이제 FTA 확산은 WTO 체제와 병행하여 전개되는 세계무역의 한 축으로서 당당히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FTA 미체결로 인한 상품수출에서의 막대한 피해는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FTA 추진은 선택이 아닌 국가번영을 위한 필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는 GATT체제 이후,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쳐 WTO체제의 출범과 도하개발아젠다, WTO체제와 FTA 병행, 공존과 확산의 배경, 그에 따르는 영향을 기존의 문헌적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세계무역환경 변화는 미국의 대외무역정책과도 맞물려 있으며, 특히 인접국가이면서 동북아시아와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산업적 관련성이 큰 일본과

5) 기본연구 2001-2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의 관계 파악을 위한 연구에 기존의 연구문헌과 최근의 무역동향, 무역협정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FTA확산속에서 수산물 교역에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기 체결된 한·칠레 FTA에서의 전개과정과 발효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효과와 영향에 대하여 관련된 연구문헌과 협상자료, 무역통계자료 등을 분석,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FTA의 확산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인 FTA 적극 추진정책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협상이 추진중인 FTA에 대하여도 기존 연구문헌과 최신의 협상동향자료와 무역통계치 등을 연구, 분석하여 예상영향과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FTA 협상에서 수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타부문에 비하여 미흡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분석하고 가급적 최신의 협상자료와 통계치를 사용하여 FTA와 관련된 협상동향과 영향, 대응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신빙성있는 기관의 분석치와 통계의 활용은 협상동향의 파악과 대응방안 강구에도 나름의 역할과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제2장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제1절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1. WTO 체제 출범

1929년 대공황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은 관세인상, 수입수량 제한 등으로 보호주의적 체제를 강화하는 등 무역장벽을 경쟁적으로 구축,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944년 7월 연합국 44개국이 미국에서 브레턴우즈(Bretton Woods)⁶⁾ 체제를 출범시키게 되었으며, 여기서 국제무역기구(ITO)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 후 1947년 10월 국제무역기구 설립이 늦어지자 우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23개국이 잠정적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GATT는 동 ‘잠정적용협정’에 의해 1948년 1월 1일 발효하게 되었으며, GATT는 ITO의 설립의 전제로 체결된 것이었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ITO 설립 무산된 이후 국제무역정책 조정의 중심기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협정은 무역확대를 통한 세계경제 전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GATT는 법적으로 국제기구가 아니고 ‘국제협정’에 불과하나, 사실상 국제무역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가입하였다.

GATT는 우루과이라운드(UR)를 포함하여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 주도한 바 있으며,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세계 113개국이 ‘UR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UR협상이 7년 7개월만에 정식으로 종결되게 되었다.

WTO 설립협정이라고도 알려진 마라케쉬협정⁷⁾은 1994년 4월 15일

6) 1944년 7월 연합국 44개국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군 통화금융회의를 열고 최종의정서(最終議定書)를 작성하였다. 여기에 IMF 협정조문과 세계은행 협정조문 2가지가 부록으로 붙었다. 1945년 12월 관계국의 정식조인이 끝나고 1946년 6월에 세계은행, 1947년 3월에 IMF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두 기관은 통화금융면에서 국제경제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브레턴우즈협정에 의거하여 발족한 이 국제통화 금융체제를 브레턴우즈체제라고 한다.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발효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국제기구 역할을 해온 GATT의 기능은 WTO로 이전되거나 대체되게 되었다. 그러나 WTO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기되거나 모든 GATT규정이 무효화된 것은 아니며 국제협정 기능은 UR최종 협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뉴라운드와 유사한 규모 및 성격의 대규모 협상은 비관세장벽 (NTBs)관련 협약(Code)에 합의하였던 제7차 동경라운드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전에 개시된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었다.

그러나, 협상의제가 확대되면서 GATT 체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결국에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출범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1986년 UR협상이 개시되었을 때 수산부문은 15개 협상그룹 중 천연자원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0년 3월 21일 타 협상그룹이 천연자원 R/O(Request/Offer)등을 사무국에 통보한 것을 계기로 관세, 비관세 그룹으로의 통합이 구체화되었다.

그 이후 1991년 4월 25일 무역교섭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 TNC)회의에서 15개 협상그룹을 7개로 통합함에 따라 수산물은 임산물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

1992년 1월 13일 마무리협상절차(Track Approach)에 합의한 이후 수산부문의 실질적인 협상은 독자적인 협상이 아니라 타 협상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되었으며, 농산물 부문은 별도의 협상그룹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 협상결과, 수산보조금은 제조업, 임업 등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보조금과 같이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수산물은 공산품, 임산물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서 논의되었으며,

7) 각 정부들은 1993.12.15일 우루과이라운드 폰타델 에스테 선언에서 시작하여 7년여의 협상 끝에 협상을 종결하고, 1994.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국의 각료들이 최종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가 1995. 1. 1일 출범했다. 1994. 4.15일 마라케쉬선언에서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는 '세계경제를 강화하고 많은 무역, 투자, 고용과 소득증대를 이끈다.'는 것을 확인했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며 GATT를 계승한 것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개도국은 1/3정도의 세율과 품목을 양허하게 되었다.

1995년에서 1999년까지 5년에 걸친 양허계획 이행 결과로, 우리나라 수산물 평균세율은 25.8%('86)에서 17.46%로 인하됨으로서 32.3% 인하 효과가 있었으며, UR 타결 당시 144개 품목을 양허하였으나 이행기간 중 품목 세분류로 품목수가 증가하여 1999년 176개 품목에 대한 양허가 완료되게 되었다.

<표-01>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수산물 양허비율 및 평균 양허세율

구 분	우리나라	일 본	미 국
양허비율 (양허품목수/총품목수)	42.6% (144/338)	84.5% (254/301)	100% (188/188)
평균 양허세율	18%	6%	2%

자료 :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수협중앙회

WTO는 마라케쉬협정에 의해 설립된 명실상부한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로, 148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여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의 감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WTO 이전의 무역체제인 GATT(General Agreement for Tariff and Trade)는 주로 공산품을 논의하는 협상기구였으나 WTO는 GATT와 달리 분쟁해결능력을 가진 국제기구로 공산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넓은 관할범위를 가졌다.

<표-02> GATT/WTO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명		시기	참가국	주요의제
제1차	제네바라운드 (Geneva Round)	1947	23	관세인하
제2차	아네시라운드 (Annecey Round)	1949	29	관세인하
제3차	토케이라운드 (Torquay Round)	1950~51	32	관세인하
제4차	제네바라운드 (Geneva Round)	1955~56	33	관세인하
제5차	딜론라운드 (Dillon Round)	1960~61	39	관세인하
제6차	케네디라운드 (Kennedy Round)	1963~67	74	관세인하 반덤핑·관세평가 협정
제7차	동경라운드 (Tokyo Round)	1973~79	99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관련 코드 합의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1986~94	117	관세인하 농업, 섬유, 서비스 무역자유화 확대, 서비스무역 및 지적재산권보호 협정
제9차	시애틀라운드 (Seattle Round)	2000~	135	추가적인 관세인하, 농업·서비스분야 추가협상, 무역-환경, 무역-투자, 무역-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 무역에 영향을 주는 분야의 국내제도 및 관행 의 규범화, 최빈개도국 문제 등

주 : 제9차 라운드 협상명칭, 협상기간, 주요의제 등의 합의에 실패함.

2001년 11월 9~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 채택하였는데, 이는 WTO 체제하 첫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남아 있는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의 감축과 환경, 지적재산권 등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한 이슈를 논의하게 되었다.

주요 협상분야는 농업, 서비스, 규범, 환경, 비농산물시장접근,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등 7개 분야로서, 수산분야는 규범(보조금), 환경(보조금), 비농산물시장접근(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등 3개 분야에서 논의하였으며, 협상기간은 당초 200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03년 9월 10~14일 멕시코 칸쿤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 실패로 2005년 12월말

까지(제6차 각료회의, 홍콩)로 연기되게 되었다 .

2004년 3월부터 WTO/DDA 협상을 재개하여 8월 1일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협상의 기본골격(Frame work)에 합의하게 되었다.

DDA에서의 수산부문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수산보조금의 개혁(감축 또는 폐지)과 수산물의 관세(고관세, 침두관세, 누진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 내지 제거하는 것으로서 수산보조금은 규범분야와 환경분야에서 각각 논의하게 되며, 수산물 시장접근은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논의하게 되었다.

2. FTA의 세계적 현황

최근 세계 무역질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FTA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FTA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일종으로 완전경제통합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지역간 협정을 의미한다. FTA에서 무역 자유화란 WTO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의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관세의 완전 철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양자간 및 지역 내 각국간 FTA를 체결,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투자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여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는 활동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하는 측면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무역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03> 무역협정의 접근방법

구분	방법	내용
형태	기능적 통합 제도적 통합	·각국이 주권을 보유, 협력 ·각국이 초국가적 기구를 설립
범위	부문적 통합 전반적 통합	·특정부문에서의 통합(ECSC, EURATOM) ·가맹국의 전부문의 통합
경제발전의 단계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발전단계가 동질적인 통합(EU, EFTA) ·발전단계가 상이한 통합

자료: Robson, P.,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Integratio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p.148

<표-04> 무역협정의 유형

유형구분	주체	유형
UN		① 장기무역협정 및 제약 ② 관세율의 특혜적 적용 ③ 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④ Sector간의 통합 ⑤ 자유무역지역 ⑥ 관세동맹 ⑦ 경제동맹
J.Tinbergen		① 수량제한의 특혜적 ② 부분적 통합 ③ 자유무역지역 ④ 관세동맹 ⑤ 경제동맹
B.Balassa ⁸⁾		① 자유무역지역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 ⑤ 완전경제통합
ALIM ELAGRAA		① 자유무역지역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완전한 경제동맹 ⑤ 완전한 정치적 통합
S.P.Magee		① 자유무역지역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완전한 경제통합
M.Chacholiades		① 부문별 특혜무역협정 ② 자유무역지역 ③ 관세동맹 ④ 공동시장 ⑤ 경제동맹

자료 : 배기형,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의 선택」 1993

8) 발라사(B. Balassa)는 지역 경제 통합을 "각 국민경제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 단위간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제조치" 또는 "각 국민경제 상호간에 여러 가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2002년 현재 WTO 사무국에 통보된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의 수는 250여개이며, 그 중에서 168여개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협정 체결 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 증대와 대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수산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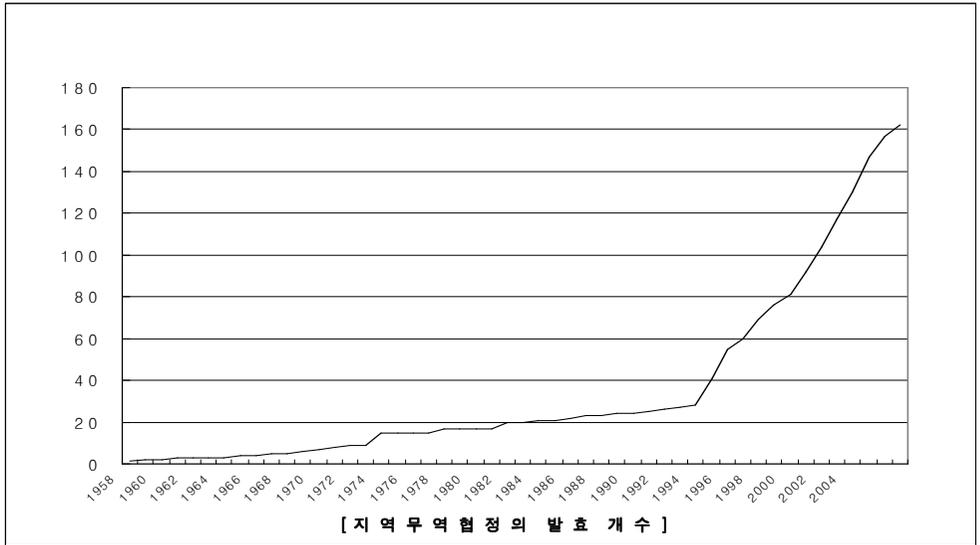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그 동안 지역주의에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2002년에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미 한·칠레 FTA를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는 가서명한 상태에 있다. 또한 중국도 2000년 11월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양지역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중국과 ASEAN은 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21세기 개방주의 기치하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싱가포르, 멕시코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 경제 통합에 대해 미르달(G. Myrdal)은 "경제의 흐름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고 조정과 통일에 의한 바람직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국제경제의 올바른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01> 무역협정 체결 추이



<표-05> 무역협정의 통보현황

기 간	통보수	통보된 무역협정
1948~1960	2	· EC(1957), EFRA(1959)
1961~1965	1	· CACM(1961)
1966~1970	3	· 아이슬란드 EFTA 가입(1970)
1971~1975	9	· EC·Norway FTA(1973) · CARICOM(1994)
1976~1980	9	· EC·Jordan FTA(1977)
1981~1985	6	· U.S.·Israel FTA(1985)
1986~1990	0	·
1991~1995	32	· MERCOSUR(1992)
1996~2001	90	· EC·체코 FTA(1996) · 불가리아·터키 FTA(1996) · EC·Mexico FTA(2000)

자료 : WTO(2001), ()안은 통보연도임.

3. WTO와 FTA 관계

WTO 출범으로 다자간 무역 질서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 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TA는 GATT/WTO체제의 다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역주의로 지칭되기도 한다. 다자주의란 GATT 및 WTO협정에 포함된 규범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정신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최혜국 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기본정신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지역적 자유무역협정(FTA)은 소수 회원국간 상호 특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지칭한다. FTA는 역내국가간 별도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적용되어 역내국가간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회원국간의 특혜적인 교역을 허용함으로써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조치(MFN)원칙과 상충되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WTO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양자간 또는 소지역내 자유무역협정을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체제의 창설을 주창했던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GATT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조항을 GATT 규범(제24조)으로 채택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특정 조건하에서 관세동맹과 함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

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⁹⁾와 GAT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천차만별이고 각 나라의 국민 경제가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반 여건이 달라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WTO에서는 물론 FTA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국제통상무대의 현실이다.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9)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¹⁰⁾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¹¹⁾.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은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¹²⁾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부 제한적으로 WTO의 다자체제속에서도 FTA의 양자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제2절 FTA체제와 수산물 시장접근

세계 각국은 21세기 세계교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하여 쟁점별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통상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협상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상분야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움직임은 21세기의 세계교역질서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FTA가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주요국의 입장변화와 무역자유화의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

10) ‘th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imposed’

11) ‘shall not on the whole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general incidence of the duties and regulations of commerce applicable i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such union’

12) ‘shall not be higher or more restrictive 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s’

민경제적 입장, 특히 수산업의 입장에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간 정부제안으로 제시한 통상쟁점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 각국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다자간 또는 양국간 그리고 그룹별로 비공식 협의를 통하여 공통관심분야 도출에 주력할 것이며, 협상방식면에 있어서도 자국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산부문 역시 자국의 수산업 위상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주장을 표명하고 있다.

결국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한 완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와 FTA의 확산은 국내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타산업에 비하여 수산업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의식이 강하고, 완전 자유화시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FTA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1. FTA 체제와 수산물 교역 변화

FTA는 경제통합의 일종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FTA에서 말하는 무역자유화란 WTO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의 단계적 감축과는 달리 역내국에 대한 관세의 완전철폐를 의미한다. 이처럼 협정국 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면 역내국간 상품교역이 늘어나는 무역전환효과와 생산요소가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여 역내경제 전체의 생산이 늘어나는 무역창출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FTA 체결이전에 관세율이 높고 수입상품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이들 효과가 커지게 된다. 또한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

다 클수록 역내국가 전체의 교역규모가 늘어나 역내국들은 역외국에 비해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FTA의 확대는 역내국은 물론 나아가 세계 전체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키게 된다. 하지만 수산업의 경우, 생산요소가 국가간, 산업간 이동이 대단히 어려운 산업이다. 수산물 생산의 기반인 바다는 본질적으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생산의 주체인 어업 종사자들의 국가간 이동도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동일국가내 산업간 이동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수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FTA 체결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는 수산업의 경우, 무역창출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요소의 역내국 간 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수산물의 경우에는 FTA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이 어렵다는 수산업의 한계 때문이다.

이런 수산업적 특이성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열위에 있을 경우, FTA 체결되면 역내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여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우리 수산업에 영향이 적은 국가(칠레, 싱가포르) 중심으로 FTA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협정발효 이후의 양국간 산업전체 무역동향을 살펴보면, 모든 산업에서 무역이 확대되었고, 수산물도 수입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물 수입증가(전년동기 대비 금액 34% 증가)는 대칠레 수입비중이 높은 어분의 증가(48% 증가한 21백만달러)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 우려하던 홍어(냉동관세 35%, 10년 양허) 수입은 동기대비 27% 감소한 상황이다.

물론 1년간의 통계로 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겠지만, 향후에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의 FTA는 2004년 11월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

는데, 싱가포르의 수산세력이 미미함에도 양허제외품목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또 원산지규정을 강화해 두었으므로 향후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국내 수산업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산물의 칠레와 싱가포르 시장진출과 관련해서는 칠레로 하여금 우리나라산에 대해 무세화(2002년 당시 평균 7%) 하도록 하였고, 싱가포르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하고 있어(무세) 우리나라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요구할 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의 FTA는 공평한 호혜적인 무역질서를 추구하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출신장효과가 기대되는 일본과는 2003년12월 이후 6차례 FTA협상을 실시했으나, 일본의 비상식적인 농수산물 제외 주장 때문에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협상시한은 2005년말로 잡혀 있다¹³⁾.

2. 주요 FTA에서의 수산물 시장접근

NAFTA 협정에서는 WTO 협상에서의 논의 그룹형성과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세부문의 경우 상품 전체적인 관세철폐 프로그램에 속하여 있고,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도 전체 원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수산업이 각국에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에 대한 반영뿐 아니라 동 협정에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세부문에 관한 사항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등급과 원칙이 제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몇 가지로 구분되어 구성,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무세화되어 있기도 하며, 회원국의 단계적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품목 수에 대한 사항, 정보제공의 제한, 기술협

13) 현재(2005.5) 수산분야 등 쟁점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의회 구성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NAFTA 협정문에서 모든 식품이나 물품에 대한 위생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수산부문에 관한 적용은 위생관련 조치 부분에서 적용 사항을 찾을 수 있다.

NAFTA 협정에서는 수산부문이 별도의 협상 대상이 아닌 일반 상품과 같이 포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근래 타결되었던 EU·칠레간 FTA 협정이나 한국·칠레간 FTA 협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NAFTA 협정 체결국간에 수산부문의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세화가 달성되었다.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많은 품목 수에 있어서 관세로 인한 보호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약 20%의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역외국의 대부분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위생관련 조치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는 식품에 대한 위생 규정이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까다로운 것을 감안한다면, 이 국가와의 협정체결시 저관세로 인한 수출의 기회보다는 위생규정에 의한 국내 수출의 차단과 역으로 관세철폐와 병행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위생관련 조치에 대한 정비로 수입의 급증과 수출 차단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할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싱가포르 경제협력을 위한 협정(JSEPA)은 양국간의 국경을 넘는 물품, 사람, 서비스, 자본, 정보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1999년 12월 일본과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에서 산·학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를 설립키로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 1월 양국간 JSEPA에 서명하였으며, 2002년 5월 8일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 동년 11월 30일에 발효되었다¹⁴⁾.

14) 2002년 일본은 싱가포르와 전면적인 경제협력협정인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동반자협정

일·싱가포르 FTA(JSEPA)의 구성은 크게 자유화·원활화 분야와 2국 간 협력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양국간 무역량의 98%이상(2000년도 금액 기준)에 상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품목¹⁵⁾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부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약 9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광공업품은 6,746개 품목 중에서 석유제품 일부, 석유 화학품 일부, 피혁 등 294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의 농림수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 2,277개 품목 중에서 무세인 품목¹⁶⁾에 한정하여 486개 품목만을 양허하였다.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의 선어를 포함한 1,191개 품목은 양허하지 않았으며 송어, 뱀장어, 잉어 등의, 양식용 치어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관세철폐 일정은 2010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여 무세화하는 등의 6단계로 구분하여¹⁷⁾ 추진하기로 하였다.

(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JSEPA)'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FTA를 포함하고, 금융, 정보통신기술, 인재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것이다. 일본의 대상가포르 수출은 무관세이고, 싱가포르의 대일본 수출은 94%가 무관세이다.

15) 싱가포르의 해외무역 액수는 국내총생산(GDP)의 3배(200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맥주류 등 일부 주류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사실상 무역에서 관세 장벽을 철폐한 국가이다. 2000년 경제성장률은 9%로 매우 높으며 수출은 1370억 달러, 수입은 1270억 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기계류, 화학제품, 연료, 수입품은 기계류, 연료, 화학제품, 식품 등이고 주요 수출국은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수입국은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타이 등이다.

16) WTO 무세 양허품목 및 실행관세율 0%로 관세할당 등을 제외한 품목

17) 부속서 I 참조, 일본의 수산물 개방협상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3장 수산업 현황과 FTA 영향

제1절 국내외 수산물 현황

1. 세계의 수산업

1990년 이후 세계 양식생산량과 자연어획량이 모두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공 양식기술과 어선, 어법, 어구 등의 발달로 어획기술의 전반적인 진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은 세계 각국이 치열한 상업적 어획경쟁과 산업화로 각종 수산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과 해양환경의 황폐화가 심화되어 자연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자 자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주요 해양인접국은 물론 지구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⁸⁾

수산물도 무역의 자유화와 교역의 확대에 따라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나라와 품종의 국제적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는 중국, 일본, 태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이 교역량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양식수산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악화 등으로 자원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어획보다는 양식에 의한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세계 수산물의 생산

세계의 수산물 생산은 계속 증가 추세로 2002년에는 132,989천톤을 생산하여 1997년 122,980천톤보다 10,000천톤 증가하였으며, 130,207천톤을 생산한 2001년보다는 2,782천톤 증가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양

18) 유엔해양법발효로 연안어장에 대한 연안국의 간섭과 입어류 과대요구, 유엔기구에 의한 공해상의 어로행위 제한 등으로 어업은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다.

식어업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해당하는 39,798천톤이며 그 외 어선어업 등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은 93,191천톤으로 70%를 차지하였으며, 1997년 대비 양식어업 생산량은 11,108천톤 증가하였다.

어선어업 등의 생산량을 국가별로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33%인 44,320천톤으로 세계 1위이며, 그 뒤로 페루, 일본, 인도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1.5%에 해당하는 1,966천톤 생산하여 12위를 차지하였다.¹⁹⁾

<표-06> 세계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천톤)

	2000년	2001년	2002년	2002년/2001년 (%)
계	130,927	130,207	132,989	102.1
중 국	41,568	42,579	44,320	104.1
페 루	10,665	7,996	8,775	111.0
일 본	5,685	5,965	5,963	100.0
인 도	5,734	5,521	5,271	95.5
미 국	5,174	5,405	5,435	100.6
인도네시아	4,848	5,068	5,420	107.0
칠 레	4,692	4,363	4,817	110.4
러 시 아	4,408	3,718	3,334	90.0
태 국	3,643	3,606	3,566	98.9
노 르 웨 이	3,195	3,199	3,297	103.1
필 리 핀	2,287	2,380	2,474	104.0
한 국	2,117	2,282	1,966	86.2
기 타	37,261	38,125	38,351	100.6

자료: FAO yearbook, Fishery Statistics, Capture Production, 2002
FAO yearbook, Fishery Statistics, Aquaculture Production, 2002

2002년도 전세계에서 생산된 132,989천톤의 각종 수산물(해조류 등 제외)중에서 75.8%인 100,744천톤은 식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52,809천톤은 신선·냉장제품으로, 26%에 해당하는 26,662천톤은 냉동품, 그리고 통조림품으로는 11%인 11,587천톤, 건제·염장품 등 기타제품은 9%인 9,685천톤이었다.

19) 중국은 양식어업 부문 및 어선어업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양식어업 부문은 생산량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어분·어유 제조, 사료 등의 비식용으로는 전체 생산량의 24.2%인 32,245천톤이 사용되었으며, 어패류의 식용소비는 지난 10년간 27.4%가 증가한 반면, 비식용소비는 6.9% 증가에 그쳤다.

<표-07> 세계 수산물 소비동향

(단위 : 천톤)

		1993	1994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04,359	112,924	116,765	120,555	122,989	118,235	127,221	130,998	130,651	132,989
식 용	소 계	74,189	78,556	84,966	88,729	91,822	93,627	95,405	96,758	99,545	100,744
	신선·냉장	32,565	35,547	40,514	43,749	46,975	48,598	50,080	50,860	52,324	52,809
	냉 동	22,544	23,601	24,176	24,563	25,011	24,774	24,837	25,215	26,214	26,662
	통 조 림	10,347	10,568	10,676	10,633	10,969	10,579	10,788	11,036	11,091	11,587
	기 타	8,734	8,839	9,599	9,783	8,867	9,676	9,700	9,646	9,917	9,685
비 식 용		30,170	34,368	31,800	31,827	31,167	24,608	31,815	34,241	31,106	32,245

자료 : FAO Yearbook of statistics, 2002

2002년도 세계 평균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16.1 kg인데, 선진국들은 연간 22.9kg, 개발도상국들은 연간 14.2kg를 소비하고 있는데, 1인당 연간 소비량 1위는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로 187.3kg, 가장 적게 소비하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로 거의 0kg, 1인당 소비 2위국은 91.8kg인 파라우, 3위는 91.5kg의 아이슬란드이며, 우리나라는 52.4kg으로 16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 외에 일본은 66.1kg, 미국은 21.3kg, 캐나다 23.9kg, 중국은 25.4kg를 각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계의 수산물 교역

과거의 오랫동안 하여 왔던 원료생산국이 외화획득 증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원료수출에서 가공품 수출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고부가가치제품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대

두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세계 수산물 시장은 일본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으나, 근래에는 점차 세계 각국으로 분산되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산물무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일본이지만 그 영향력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일본시장의 매력상실로 산지의 눈은 다른 시장 개척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이었던 낙지와 새우, 대구, 연어, 송어, 고등어 등에서 확실히 그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수산물은 유럽과 러시아, 미국 등을 목표로 한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²⁰⁾.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해조류 소비시장이 유지되어 왔으나, 호주·영국 등 육식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비관세장벽의 활용을 강화하여 검사와 검역의 강화 및 Traceability(생산이력추적시스템)²¹⁾ 채택 및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2002년도 세계 수산물 수출규모는 58,211백만달러로 2001년 56,195백만불 대비 3.6% 증가하였는데 나라별 수출을 보면 중국이 그동안 1위를 유지해 왔던 태국을 제치고 4,485백만달러를 수출하여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였고, 2위는 태국으로 3,676백만달러, 우리나라는 1,046백만달러로 17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2001년 1,781백만달러를 수출하여 10위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에는 2,030백만달러를 수출하여 3단계를 뛰어오른 7위를 차지하였다.

20) 낙지는 2~3년전까지만 해도 일본으로 10만톤이 수입되었으나, 지금은 7만톤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21) “생산, 처리, 가공, 유통판매 각 단계에서 식품과 정보를 추적하고 소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08> 세계 수산물 수출실적

(단위 : 백만달러)

	2000년	2001년	2002년	2002년/2001년(%)
계	55,295	56,195	58,211	103.6
태 국	4,367	4,039	3,676	91.0
중 국	3,603	3,999	4,485	112.2
노 르 웨 이	3,533	3,364	3,569	106.1
미 국	3,055	3,316	3,260	98.3
카 나 다	2,818	2,798	3,035	108.5
덴 마 크	2,756	2,661	2,872	107.9
칠 레	1,794	1,939	1,869	96.4
스 페 인	1,600	1,844	1,900	103.0
대 만	1,756	1,817	1,664	91.6
베 트 남	1,481	1,781	2,030	114.0
인도네시아	1,584	1,535	1,491	97.1
러 시 아	1,386	1,528	1,399	91.6
네 달 란 드	1,344	1,421	1,083	126.9
영 국	1,259	1,306	1,353	103.6
아이슬란드	1,229	1,270	1,429	112.5
인 디 아	1,405	1,238	1,412	114.1
한 국	1,386	1,156	1,046	90.5
기 타	18,939	19,183	19,918	103.8

자료 : FAO Yearbook of statistics, 2002, 고래, 물개, 기타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 제외

2002년도 세계 수산물 수입규모는 61,446백만달러로 2001년 59,421백만달러 대비 3.4% 증가하였는 바, 나라별 수입을 보면 매년 평균 150억달러 규모를 수입하였던 일본이 2002년에는 현저히 감소한 13,646백만달러를 수입하는데 그쳤으나, 순위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였으며, 2위는 미국으로 10,065백만달러를 수입하여 일본과 함께 세계 수산물 수입 시장의 양대축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861백만달러를 수입하여 2001년 11위에서 홍콩, 덴마크 등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9위를 차지하였고, 중국은 2001년에 비해 23% 수입증가율을 보였으나 8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09> 세계 수산물 수입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2년/2001년 (%)
계	60,071	59,421	61,446	103.4
일 본	15,513	13,453	13,646	101.4
미 국	10,451	10,289	10,065	97.8
스 페 인	3,352	3,715	3,853	103.7
프 랑 스	2,984	3,056	3,207	104.9
이 태 리	2,535	2,716	2,906	107.0
독 일	2,262	2,349	2,420	103.0
영 국	2,184	2,237	2,328	104.1
중 국	1,796	1,787	2,198	123.0
홍 콩	1,949	1,768	1,766	99.9
덴 마 크	1,806	1,734	1,806	104.2
한 국	1,372	1,627	1,861	114.4
기 타	13,867	14,690	15,390	104.8

자료 : FAO Yearbook of statistics, 2002

주 : 고래, 물개, 기타 수산 포유동물 및 수산식물, 어망제외

3) 주요 국가별 수산물 시장의 동향

세계 최대의 수산물시장인 일본의 수입형태는 소재수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재수입 증가 추세인데 이러한 경향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수입은 1982년에 100만톤대, 1993년에 300만톤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2002년 380만톤 시대에 도달하였는 바 한계에 이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8년 이후 총수입량은 매년 증가한 반면에 금액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2002년의 경우 수량 2,600톤 감소 (총수입량 3,820,573톤)하고, 금액 327억엔 증가(총수입액 1조7562억86만엔)하였다.

이는 일본의 수입도 세계 흐름과 같이 ‘양에서 질로의 전환기’맞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²²⁾

또한 일본은 생산이력추적시스템 등 새로운 위생관리제도의 도입을 확산하여 향후 외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동등성원칙에 의거 도입을 주장할 가능성 있으며, IQ제도²³⁾도 지속적 유지하여 수입의 제한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수산물 시장은 생산, 수입, 수출 모두 안정적으로 생산은 5,400천톤, 수출은 3,200백만달러, 수입은 10,100백만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입제한은 없으나, 반덤핑조치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생과 안전 등의 소비자와 국내산업의 보호차원, 바이오테러대응법률²⁴⁾ 등의 정치외교적인 장치들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의 수산물 생산대표국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가 320만톤 내외의 안정적 생산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수출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등은 수입국을 다변화 하면서 일정수준의 외국산 수산물을 계속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전체적으로 위해물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유럽지역은 전체적으로 생산, 수입, 수출 등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에서 중·동유럽지역 FDI(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 증가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산부문에서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는 중국은 특성상 원재료의 수입을 지속하고 일부 저차가공품 공장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급수산물 및 고차가공품²⁵⁾의 수입과 자국

22) 가공품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수량이 11만 7천톤, 금액 375억엔 증가했다.

23) 수입할당제도(IQ, Import Quota) : 지정품목의 교역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24) 미국 테러사태(9.11)로 바이오테러분야 대응책으로 동법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되었다.(’02.05.23)

25) 수산물의 가공에 있어 어업이나 양식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 필요성이 고조되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품목이 다양화됨으로써 고도로 성장하고 있다. 과거부터 해오던 건어물·염장품 등의 저차가공품은 적어지고, 냉동품·조리냉동품·연제품(煉製品)·통조림·조미가공품 등의 고차가공품(高次加工品)의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생산 수산물의 소비량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모든 기업에 수출입업무를 허가하고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과 같은 수출과 관련된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강제성 국가기준인 ‘예비포장식품표시총칙’ 및 ‘예비포장특수영양식품표시총칙’을 제정하여 2005년 10월 시행 예정에 있으나, 아직도 중국의 수입절차 및 각종 조세와 준조세제도가 복잡하고 불분명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세계 수산물 무역은 일본 중심에서 세계 각국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더욱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어획규제강화와 수출가격, 수출형태의 변화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²⁶⁾

특히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결과에 따라 수산물교역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나, 협상의 진전과 관계없이 수산물 무역자유화는 지금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블록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와 전망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전망을 보면, 수출은 향후 수출여건이 원화강세 또는 약화, 유가급등락,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교역조건 개선 등의 유리·불리한 조건의 혼재로 전망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⁷⁾

수입은 국내적으로 수산물 소비증가 및 국내 수산물 생산감소 내지는 정체로 계속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 특성을 겨냥한 중국, 베트남 등의 저가공세²⁸⁾와 고급수산물 생산국²⁹⁾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무역적자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 국제기구에서 공해상 회유어종에 대하여 적정한 TAC 수준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안국에서도 자국어선의 감축, 휴어기 등을 통한 어족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7) 수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생산이 점차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주 수출품목은 양식수산물(굴, 김, 넙치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국가에서는 저임금과 각국의 유타어선 매입, 양식량의 증가 등으로 급속히 세계수산물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29) 대표적 국가로는 노르웨이가 있다.

2. 한국의 수산업

1) 한국 수산물 생산추이

한국의 수산물 총공급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 수산물의 국내소비는 1995년 3,215천 톤을 최고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국내소비량이 2,395천 톤까지 대폭 감소하였다.

국내 생산면에 있어서도 자원고갈, 원양어장의 상실, IMF의 영향 등으로 1995년 3,348천톤에서 1998년 2,835천톤까지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수산물 수입은 1980년 41천톤 1990년 380천톤, 2000년 1,420천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도 한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도 2,909천톤에 비해 395천톤이 감소한 2,514천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획비중이 큰 연근해 어업과 양식어업, 원양어업에서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어업별로 살펴보면, 연근해어업은 오징어, 고등어, 명태, 갈치, 멸치 등 대중성 어종의 어획 부진에 기인한 것이며. 양식어업은 김, 다시마, 톳 등의 작황이 부진한 것에 기인한다.

그리고 원양어업의 경우, 오징어, 명태가 40%나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신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하여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향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원양어업 생산량도 신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어장축소 및 어장확보 곤란으로 해외어장개척 및 어업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생산량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1991년 43,295천명에서 2000년도 47,977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총인구 대비 어업종사자의 비중도 1991년 0.47%에서 2000년 0.29%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해면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는 1990년대에 들어와 매년 약 2~3천호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0년도의 어가호수는 81

천 8백호로 전년 대비 16.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2000년도 어가구원수도 251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2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어업종사자수는 140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수산물 교역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19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도에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3억 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10> 수산물 수출입동향 총괄(2004.6월말 기준)

(단위 :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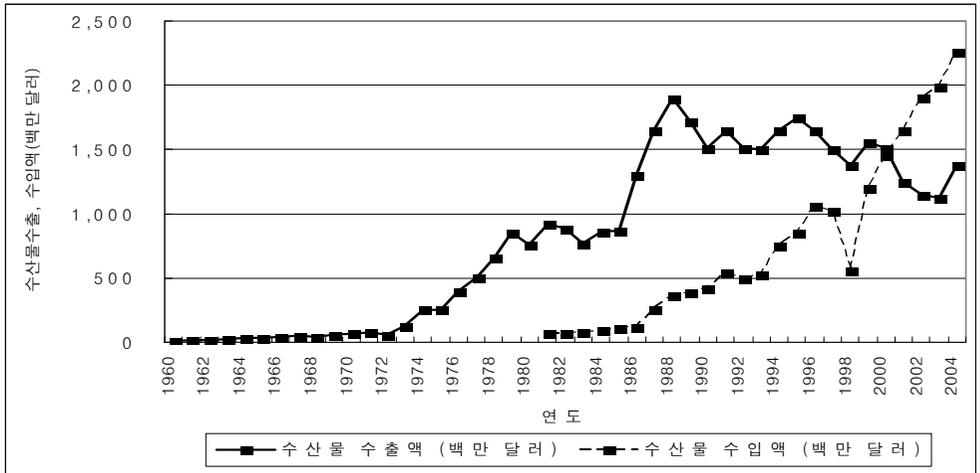
구 분	당 월			누 계		
	2003.6	2004.6	증감	2003.1~6	2004.1~6	증감
수 출	93	108	15(16%)	552	608	56(10%)
수 입	137	159	22(16%)	933	1,046	113(12%)
무역수지	△ 44	△ 51		△ 381	△ 438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 ()내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1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3년에는 수입 1,961백만달러, 수출 1,129백만달러로 439백만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6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608백만달러로 전년동기 552백만달러에 비해 1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047백만달러로 전년동기 933백만달러에 비해 12% 증가한 상태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14.9% 증가한 438백만달러 적자를 기록 중에 있다. 국가전체 대 수산물 수출입 비중은 1997년에는 수출 1.1%, 수입은

0.7%이었으나, 2004년 6월 기준으로는 수출 0.49%, 수입 0.97%로 변화하였다.

<그림-02>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추이



<표-11>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달러)

년도별 (월별)	국가 전체			수산물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7	136,164	144,616	△ 8,452	1,493	1,045	448
1998	132,313	93,282	39,031	1,369	587	782
1999	143,685	119,752	23,933	1,521	1,179	342
2000	172,268	160,481	11,787	1,505	1,411	94
2001	150,439	141,098	9,341	1,274	1,648	△ 374
2002	162,471	152,126	10,344	1,160	1,884	△ 724
2003	193,817	178,827	14,991	1,129	1,961	△ 832
2004.1~6	123,490	107,979	15,511	608	1,047	△ 439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2004년 6월 기준)

2004년 6월 기준으로 일본(65%), 미국(6%), 중국(9%) 3개국이 2004년 6월말 전체 수출금액의 79%(물량 59%) 차지하고 있으며, 각국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굴, 미역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9%(물량 0%)증가 하였는데, 참치는 2003년 6월 94,895천달러에서 2004년 6월 89,266천달러로 6%, 5,629천달러가 감소하였다. 굴은 2003년 6월 20,692천달러에서 2004년 6월 26,941천달러로 30%, 6,249천달러 증가하였다. 미역의 경우는 2003년 6월 11,450천달러에서 2004년 6월 24,618천달러로 115%, 13,168천달러 증가하였다.

미국은 참치 등 일부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오징어, 굴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8% (물량은 18%) 감소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오징어가 2003년 6월 3,834천달러에서 2004년 6월 1,758천달러로 54%, 2,076천달러로 감소하였다.

굴에 있어서는 2003년 6월 11,627천달러에서 2004년 6월 10,233천달러로 12%, 1,394천달러 감소하였다. 참치는 2003년 6월 947천달러에서 2004년 6월 2,213천달러로 134%, 1,266천달러 증가하였다.

중국은 오징어, 어란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73%(물량 28%) 증가하였는데, 오징어는 2003년 6월 3,795천달러에서 2004년 6월 16,841천달러로 344%, 13,046천달러 증가하였다. 어란의 경우는 2003년 6월 705천달러에서 2004년 6월 6,446천달러로 814%, 5,741천달러 증가하였다.

기타 국가로서 스페인(17백만달러), 태국(18백만달러), 뉴질랜드(26백만달러), 대만(14백만달러) 규모를 보였다.

<표-12>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증감 현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국가별	2003			2003 1~6월(A)			2004 1~6월(B)			증감율(B/A)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계	425	1,129	100	231	551	100	212	608	100	△8	10
일 본	150	740	66	80	361	65	80	395	65	0	9
미 국	23	80	7	11	38	7	9	35	6	△18	△8
중 국	56	71	6	29	30	5	37	52	9	28	73
기 타	196	238	21	111	123	22	86	126	21	△23	2

자료 : 해양수산물 통계 (2004년 6월 기준)

2004년 6월 기준 의거 중국(40%), 러시아(11%), 일본(9%) 3개 국가가 6월말 전체 수입금액의 60%(물량 60%)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새우, 뱀장어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24% (물량 1%)증가하였다.

러시아는 명태 등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8% (물량 45%) 감소하였으며, 일본은 명태, 갈치의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24% (물량 63%증가) 증가하였고, 기타 국가로서는 미국(67백만달러), 베트남(69백만달러), 태국(48백만달러), 대만(29백만달러) 등이다.

<표-13> 주요 수산물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국가별	2003			2003 1~6월 (A)			2004 1~6월 (B)			증감율 (B/A)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점유율	물량	금액
계	1,239	1,961	100	574	933	100	567	1,047	100	△ 1	12
중 국	462	714	36	217	337	36	219	419	40	1	24
러시아	270	299	15	123	137	15	67	113	11	△45	△18
일 본	69	149	8	34	74	8	55	92	9	63	24
기 타	438	799	41	200	385	41	226	423	40	13	10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2004년 6월말 기준)

3)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정책과 수출입관리제도

(1) 수산물 무역정책 경과

1960년대의 수산정책은 절대빈곤 탈피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입각한 증산위주의 정책기조와 수산물에 대한 무역정책은 수산물 수출기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수산물 수출증대를 목표로 하여 수산물 수출진흥책을 수립(1960년)하고, 1966년에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본목표에 따라 수산물 수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969년도 수산물 수출진흥대책에서는 미국, 일본에 편중된 수출지역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였으며, 냉동, 냉장시설 및

각종 수산물 가공공장 확충, 수산물 검사제도 강화를 통하여 품질향상과 규격화를 도모하였다.

1970년대에는 수산물 수출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수산정책은 수산업 근대화 촉진 및 국민소득 증대, 국내식량 자급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73년,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연근해어선어업 및 원양어업을 중심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수출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정부에서는 수산물 수출증대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재 생산과 공급의 확대 및 집하체계구축, 수출품 품질고급화, 수출지원제도 개선 및 강화, 수출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1990년대는 수산물 무역구조의 전환기로 특징을 지을 수 있으며, 수산물 무역측면에서는 원양어업 육성과 수산물 수급안정이라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출 우선정책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WTO 체제하에 있어서 한국의 수산물 무역정책은 인류의 공동재산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무역자유화라는 국제적 의사를 존중한 정책수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1989년 10월 GATT/BOP 합의에 따른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의거 1997년 7월 1일 수산물 전품목에 걸쳐 수입을 개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수출마케팅, 수산물 수입자유화 문제가 수산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수산물 통상정책이 수산물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2) 수산물 수출입관리제도와 운영실태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산물의 수출입관리는 대외무역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법과 각종의 법령 및 고시, 공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입품목 관리체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입품목 관리체도로써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공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 수출입공고체계와 49개 개별법에 의한 품목별 제한내용을 취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

출·수입 제한품목에 공고되지 않은 품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하지 않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은 특정산업 보호위주의 관세지원을 통한 산업지원정책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적 자원배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주목적을 두고 균등관세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관세율조정 권한의 일부를 법률이 규정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는 덤핑방기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의 8가지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GATT와 UNCTAD의 GSTP 그리고 ESCAP의 방콕협정 등 국제기구에 의한 관세협상과 쌍무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세(관세양허)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불리는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 수입국내의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GATT 1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한다.

현재 검사·검역업무의 무역규제 수단화는 기본적으로 UR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UR 동식물 위생·검역협정(SPS)이 체결되어 있어 국제협약 범위내에서 검사와 검역을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는 수출손실보조금, 수출장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직접보상형식으로 출발하여 금융과 세제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주요형태는 생산 및 원자재 구매를 위한 무역금융, 수출산업에 대한 시설자금금융, 중장기 수출금융, 수출신용보증 및 보험 등이 있으며, 조세지원 제도중에는 내국세지원제도와 관세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3) 수산물 관세제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 품목은 총 400여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품목중에서 03류가 2627H(6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7U(16.4%), 12류 39개(9.7%)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전체 65%를 차지하는 03류의 기본관세 평균은 17.6%로 전체 평균세율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0301(활어) 및 0303(냉동 어류)은 10%, 0302(신선·냉장 어류) 및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은 20%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수산물 품목(HS분류)의 기본관세는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관세율 평균은 17.7%이고, 92%에 해당되는 370개 품목이 중심세율인 8%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전체 수산식품의 65.0%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262개 품목)는 3단계(5%, 10%, 20%)의 관세율 구조로 매우 단순하며, 그 중에서 굴치패(0307-10-1010) 1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10%, 20%라는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제도는 증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물품에 한하여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종량세, 증가세와 더불어 증가종량선택세와 증가종량복합세(병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관세체계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조정관세품목중 증가종량선택세제도³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된 종량세제도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가격이 높은 활어는 모두 증가세 형태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신선 또는 냉장어류(0302), 냉동어류(0303), 어류의 필레트 및 기타어육(0304), 건조·염수 또는 훈제한 어류(0305)는 증가세와 종량세제도가 혼용되고 있는데, 종량세 부과품목이 훨씬 더 많다.³¹⁾ 한편 수산식품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총수산물 공급에서

30)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탄력관세제도 가운데 14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만이 활용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증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관세법 69조)

31) 현재 증가세는 19품목, 종량세는 234품목으로 종량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차지하는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1980년 1.9%에서 1990년 25.0%, 2000년 31.2%로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가공비율은 73.9%로(1997년 기준) 높은 가공율을 나타낸다.

따라서 국제 수산물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관세부담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하여 수산가공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물론 국내물가의 상승압력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수산물 수급동향과 국내소비성향 등을 기초로 하여 저가 수입품의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이 수입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관세할당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효율적일 것이다.

제2절 한·칠레 FTA 체결과 한국 수산업 영향

1. 한·칠레 FTA 의의 및 경과

WTO 가입 대다수의 회원국이 FTA를 체결하였지만 일본, 중국과 한국은 세계 어느 국가 혹은 지역과도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일본과 싱가포르가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한국과 칠레가 FTA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는 향후 일본, 멕시코,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와 한국과 아세안, 한·중·일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의 시발점이며, 특히 WTO 등 다자간 협상에서의 대외개방 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능동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 FTA를 전략적 통상정책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의 첫 결실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있고,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남미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 마련을, 칠레는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역동적인 동북아시아 진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부 예외 품목을 설정한 일본과 싱가포르간 FTA와는 달리 금번 체결

된 FTA는 농업을 포함한 전산업이 자유화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이고 무역규범,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동식물 검역조치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FTA로서 GATT/WTO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경쟁정책등 WTO 플러스적인 조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통상제도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할 우리나라의 FTA 체결의 모델케이스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칠레는 199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약 4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25일에 타결을 하게 되었으며, 2004년 4월 1일 정식발효 되었다.

<표-14> 한·칠레 FTA 협상일지

1998.11. 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1998.11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에 합의
1999.4월, 6월	고위작업반회의 개최(서울, 산티아고)
1999.9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합의
19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11.14	양자 정상회담(브루나이)에서 조기타결 입장 확인
2000.12.12~15	제4차 협상개최(서울)
2001.6월,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외무장관, 협상 재개 합의
2001.10월	양자 정상회담(상해)에서 조기 타결 입장 확인
2002.2.21~22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8.20~23	제 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제네바)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 개최(제네바)
2002.10.18~20	제 6차 협상 개최(제네바)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서울 및 산티아고)
2003.2.15	정식 서명(서울)
2003.7.8	우리측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2003.12.26	국회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통과
2004.2.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4.4.1	발효
2004.6.10	한·칠레 FTA 이행 제1차 자유무역위원회(FTC) 개최(산티아고)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2. 한·칠레 FTA 수산부문 내용

한·칠레 FTA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칠레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허를 받도록 하여 최대한 우리나라 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무세화되도록 하였다.

<표-15> 한·칠레 FTA 수산물 품목별 양허안

양허종류	품목수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77	고래고기, 활어(열대어,송어,실뱀장어,잉어,방어,연어,돔 등) 신선냉장(청어,대구,정어리,고등어,명태,갈치,꽃게 등), 필레트(붕장어,가자미,참다랑어 등), 어분류, 간장(건조,훈제),어란(건조,훈제), 염장·염수장(어란,송어,갈치,정어리,고등어,조기,게,바지락,소라,성게,해삼 등), 굴, 가리비, 오징어, 문어, 김, 파래, 한천, 통조림(청어,정어리,가다랭이 등), 생선소시지, 생선묵 등
5년 철폐	86	활어(돔,농어 등), 신선냉장(연어,대구,갈치,아귀,황다랭이,가다랭이 등), 냉동(대구,곱상어,민대구,은대구,조기,명란,참다랭이,필레트,닭,새우류,새우살,왕게,꽃게,갑오징어,오징어,낙지,꾸꾸미 등), 통조림(고등어,콩치,굴,바지락,홍합,골뱅이 등), 조제해삼, 마른뿔, 조미오징어 등
10년 철폐	36	냉동(송어,정어리,고등어,명태,갈치,전갱이,삼치,복어,새꼬리민태,홍어,필레트,명태연육,굴,문어,가리비,바지락 등), 통조림(정어리,전갱이 등), 조제골뱅이, 분·조분(비식용) 등
계	399	

자료 :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수협중앙회

1) 양허내용

먼저, 우리나라는 칠레측에 협상 착수 직전 3년('96~'98)기간 중 칠레로부터 수입 실적이 전혀 없는 분한천, 냉동붕장어 등 277개 품목에 대해 FTA발효 즉시 무관세화 하기로 양허했다

다음으로 협상시 현재 5만달러 이하로 수입되거나 향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인 연어, 왕게, 민대구 등 8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여 5년째에 무관세화하기로 양허했다.

그 다음으로 협상시 현재 대칠레 수입실적이 많거나 국내 어업인 및 관련업계에 민감한 품목인 어분, 홍어, 정어리 등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여 10년째 해에 무관세화하기로 양허했다.

칠레는 200개 수산물중 200개 전체에 대해 FTA 발효즉시 무관세화하기로 양허했다.

2) 주요 양허품목별 세부내용

대칠레 수입 수산물의 67%(2001년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어분(57%, 관세 5%), 정어리(10%, 관세 10%) 등은 양식사료로 활용되므로 어류양식업계 생산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로 냉동 형태로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어 등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어 국내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0%의 조정관세를 부과중인 홍어(대칠레 수입 수산물의 19%)의 경우 수입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연간 국내 총소요량의 98%인 8,352톤(2001년 기준)이 수입(합작수입 1,516톤) 되고 있고 국산과 수입산은 품질, 선호도, 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물도 FTA 체결을 계기로 칠레관세가 무세화함에 따라 향후 칠레를 교두보로 남미시장에 김과 생선묵, 통조림 등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점차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16> 한·칠레 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2001		2002		2003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수 출	9	134	75	87	443	475
수 입	12,777	25,919	22,752	22,375	33,208	32,362
수 지		△25,785		△22,288		△31,887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2001~2004년 기준)

<표-17> 한·칠레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3년)

(단위:톤,천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명	물량	금액	품 목 명	물량	금액	점유(%)
계	443	475	계	33,208	32,362	100
냉동오징어	443	475	어류의 분·조분·펠리트	22,622	14,942	46
			홍어(냉동)	4,771	9,962	31
			정어리(냉동)	4,489	4,628	14
			어란	107	560	2
			기 타	1159	2,035	7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 (2003년 기준)

<표-18> 칠레산 주요 수산물 양허내용과 연도별 수입현황

(단위: 톤, 천달러, %)

품 종	양허 기간	세율 (%)	구분	연도별 수입량		
				1999	2000	2001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10	5	중량	5,766	18,364	25,134
			금액	3,336	9,638	14,653
			점유율	27	41	57
홍어(냉동)	10	40	중량	2,481	4,031	2,912
			금액	3,591	7,224	5,024
			점유율	29	30	19
정어리(냉동)	10	10	중량	1,246	1,575	2,545
			금액	1,290	1,682	2,536
			점유율	10	7	10
3개 품목 합계			중량	9,493	23,970	30,591
			금액	8,217	18,544	22,213
			점유율	67	78	86
전체 합계(총 57개 품목)			중량	12,777	26,195	32,375
			금액	12,336	23,710	25,919
			점유율	100	100	100

자료 : 해양수산부 통계(2002년 기준)

어분은 칠레 수산물 수입액의 57%를 차지(2001년도 기준)하고 있고 대부분 양식사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양식업계는 생산가 절감을 위해 어분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양식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조기에 무세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국내 어분 생산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현행 관세가 5%에 불과하고 10년에 걸쳐 무세화(1년에 0.5%씩 인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9> 칠레산 어분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구 분	연 도 별			비 고 (‘01년기준)
	1999	2000	2001	
국내생산량	40,130	33,660	33,259	국내소요량에 대한 수입비중 은 65%임
전체수입량(a+b)	29,080	46,672	54,793(100%)	
칠레수입량(a)	5,766	18,364	25,134(46%)	
기타(b)	23,314	28,308	29,659(54%)	
수 출 량	5,070	3,204	3,316	
국내소요량	64,140	77,128	84,736	

주 : 국내소요량 + 수출량 = 국내생산량 + 전체수입량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KMI 관련자료 참조

정어리는 대칠레 수입의 10%를 차지(2001년도 기준)하며, 어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양식사료로 이용되고 현행 관세가 10%이며 10년에 걸친 단계적 무세화(1년에 1%씩 인하)를 감안하면,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분과 같이 조기도 무세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표-20> 칠레산 정어리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구 분	연 도 별			비 고
	1999	2000	2001	
국내생산량	17,142	2,207	129	
전체수입량(a+b)	3,203	6,486	13,073(100%)	
칠레수입량(a)	1,246	1,575	2,545(19%)	
기타(b)	1,957	4,911	10,528(81%)	
수 출 량	1,655	1,376	203	
국내소요량	18,690	7,317	12,999	

주 : 국내소요량 + 수출량 = 국내생산량 + 전체수입량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KMI

홍어는 대칠레 수입의 19%를 차지(2001년 기준)하고 있는데, 국내자원이 고갈되어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이미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01년 기준 국내 총소요량 8,563톤중 국내생산은 211톤이고 수입은 8,352톤으로 수입의존도는 9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에서 칠레산 홍어는 2,912톤으로 약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미국 등으로부터도 많이 수입되고 있다.

홍어는 국산(7~8만원/kg)과 수입산(3~5천원/kg)은 품질, 선호도, 가격 등에 있어 뚜렷이 차별되어 경쟁상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정체결로 홍어 수입이 증가하여도 국내 생산어민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21> 칠레산 홍어 수출입 실적

(단위 : 톤)

구 분	연 도 별			비 고 (‘01년기준)
	1999	2000	2001	
국내생산량	662	256	211	국내소요량에 대한 수입 의존도 98%임
전체수입량(a+b)	6,847	9,175	8,352(100%)	
칠레수입량(a)	2,481	4,031	2,912(35%)	
기타(b)	4,366	5,144	5,440(65%)	
국내소요량	7,509	9,431	8,563	

주 : 국내소요량 = 국내생산량 + 전체수입량

출처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외교통상부, KMI

3. 한·칠레 FTA 발효후 교역 동향

한·칠레 FTA 이후 2004년 4월 ~ 2005년 2월간 양국의 교역량은 55.5% 증가하여 월평균 226백만달러(2,275억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세계 교역증가율(25.0%)보다 25.5% 높은 수준이다.

2004년 4월~2005년 2월간 수출증가율은 58.6%, 수입증가율은 54.3%로 수입증가율이 월등히 높던 기존의 추세가 역전되어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4.3%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수출의 경우 휴대용전화기, 자동차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지속, 전년 동기대비 58.6% 증가하였다.

수입의 경우 동광, 동피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54.3% 증가하였으나, 2005년 들어 동제품의 수입이 정체되면서 2005년 2월 전년 동월대비 수입이 24.2% 감소하였다.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비율로 늘면서 무역적자도 전년 동기대비 51.3% 증가하여 월평균 92,5백만달러(931억원)를 기록하였다.

<표-22> 한·칠레 FTA 발효후 양국간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대 세계			대 칠레(전체교역 중 칠레 비중,%)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수 출	188,906	237,394	25.7	463(0.2)	735(0.3)	58.6
수 입	168,281	209,222	24.3	1,136(0.7)	1,753(0.8)	54.3
무역수지	20,625	28,172	36.6	-673(-)	-1,018(-)	51.3
교역량	357,186	446,616	25.0	1,599(0.4)	2,488(0.6)	55.5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참고

<표-23> 한·칠레 FTA 체결이후 양국간 수출입 현황

산업별 교역		전년 동기 대비			증감사유
		03.4~12월	04.4~12월	증감율	
공산품	수 입	732백만달러	1,301백만달러	78%	동광석 가격 상승
	수 출	814백만달러	1,418백만달러	74%	자동차, 휴대폰 증가
농산물	수 입	41백만달러	63백만달러	54%	돼지고기, 포도주 증가
	수 출	0	0	0	-
수산물	수 입	27백만달러	36백만달러	34%	어분 증가
	수 출	0	0	0	-

자료 :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해양수산부

<표-24> FTA 발효후 대칠레 수출입 증가율(전년 동월대비)

(단위 : 천달러)

년, 월	수 출		수 입		교역량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4.4	60,269	50.0	191,524	87.4	251,793	76.8
2004.5	49,021	5.4	131,105	88.1	180,125	55.0
2004.6	54,075	17.1	168,890	75.8	222,965	56.7
2004.7	59,308	46.1	138,252	42.7	197,561	43.7
2004.8	64,885	87.9	164,010	194.5	228,895	153.7
2004.9	60,174	53.0	159,963	81.1	220,137	72.4
2004.10	64,936	21.1	184,358	54.2	249,294	43.9
2004.11	85,653	109.7	109,927	16.3	195,580	44.5
2004.12	73,266	59.5	171,100	88.3	244,366	78.7
2005.1	90,093	137.6	200,132	36.9	290,225	57.7
2005.2	73,112	94.5	133,563	-24.2	206,675	-3.3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참고

전년 동기대비 농축수산물은 35.7%, 농산물 29.2% 증가하여, 각각 대세계 수입증가율보다 높지만 칠레로부터의 총수입증가율(54.3%)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였다. 포도주 단일품목 제외시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2.7% 정도이다.

<표-25> 한·칠레 FTA 체결후 농축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구 분	대 세 계			대 칠 레 (전체수입 중 칠레 비중,%)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총 수 입	168,280,642	209,222,152	24.3	1,136,158(0.7)	1,752,825(0.8)	54.3
농축수산물	12,093,252	13,444,465	11.2	105,654(1.9)	143,323(1.9)	35.7
농 산 물	6,382,119	7,453,208	16.8	19,699(0.3)	25,442(0.4)	29.2
농 산 물 (포도주 제외)	6,336,986	7,397,718	16.7	16,196(0.3)	16,628(0.2)	2.7
축 산 물	1,898,488	1,784,711	-6.0	33,945(0.2)	55,201(0.2)	62.6
임 산 물	1,985,108	2,092,569	5.4	20,107(2.3)	20,329(1.7)	1.1
수 산 물	1,827,537	2,113,977	15.7	31,903(2.7)	42,351(2.2)	32.7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참고

칠레산 수산물 수입은 대세계 수입의 증가(15.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증가(32.7%)하였으며, 칠레로부터 수입이 대세계 수입의 42.1%를 차지하고 있는 홍어는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전년 동기대비 수입이 오히려 31.2% 감소하였다.

전체 칠레수산물 수입의 53.9%, 대세계 수입 중 68.1%를 차지하는 칠레산 어분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48.8% 증가한 22.8백만 달러(229.8억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칠레산 어분의 경우 국내소요량중 수입비중이 2/3 가량이며, 양식업

계는 생산가 절감을 위해 관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표-26> 칠레산 수산물 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품 목	대 세 계			대 칠 레 (전체수입 중 칠레 비중 %)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수산물	1,827,537	2,113,977	15.7	31,903(2.7)	42,351(2.2)	32.7
홍 어	22,264	15,974	-28.3	9,781(43.9)	6,725(42.1)	-31.2
어 분	24,272	33,520	38.1	15,349(63.2)	202,839(68.1)	48.8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참고

4. 한·칠레 FTA 영향

한국과 칠레간 FTA 발효 이후 2004년 12월까지 칠레산 수산물 수입은 FTA 발효전에 비하여 금액면에서 34%(36백만달러), 물량은 23%(3만 6천톤)가 늘었으나, 홍어와 정어리 등 주요 품목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전에 대칠레 주요 수입품(2003년 91% 점유) 가운데 FTA 발효 이후 수입증가가 예상되었던 '2010년 관세철폐 품목'의 경우 사료용 어분 수입은 늘었으나 당초 국내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홍어와 정어리 수입은 오히려 27%와 65%가 각각 감소해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FTA 발효전 대칠레 수입비중(46%)이 가장 높았던 사료용 어분의 경우, 물량은 2만1천톤에서 2만7천톤으로 27%, 금액은 14백만달러에서 21백만달러로 48%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료용 어분 수입증가는 국내 양식 수산업계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대부분 냉동으로 수입되는 홍어는 3천톤에서 2천톤으로 감소하면서

수입금액도 7백만달러에서 5백만달러로 27% 줄어 들었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홍어 소비가 둔화된데다 칠레 현지의 생산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냉동오징어는 3492톤, 599만9천달러가 수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0%가 증가했다.

이 밖에 FTA 발효 이후 대서양 냉동연어와 이빨고기(일명 메로) 등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들 품목은 대칠레 수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어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칠레에 수출된 국내산 수산물은 50톤, 11만2천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년 경과, 결과를 보건대 우리 수산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엄격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칠레 FTA 체결 경험을 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FTA 협상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FTA 수산부문 협상동향

1. 아시아지역

1) 한·싱가포르 FTA

(1) FTA 추진 경과

FTA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 전환 및 다수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우려가 적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5년 4월 16일 정부당국자간 협정내용에 대해 가서명한 상태로 2005년 중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구와 내수시장의 규모, 관세를 포함한 개방적인 통상시스템, 산업구조상의 경쟁관계 등으로 볼 때, 양국간 FTA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의 시장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으나, 서비스 및 투

자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선진개방에 대한 학습효과 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우리 농업계가 ‘농업을 제외한 FTA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던 사안이다. 특히, 일본·싱가포르간 FTA에서 농업을 제외한 사례를 우리 정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가 농업분야 자유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농업 제외가 가능하나, 이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지역과의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분야 자유화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는 과거에 논의가 있었던 한·태국 FTA, 현재 진행중인 한·아세안 FTA, 동아시아 FTA 추진과 연관시키는 전략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표-27> 한·싱가포르 FTA 협상일지

1999 : 오클랜드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고축통 총리, 한국·싱가포르·칠레간 FTA 체결 제의 이래 수시로 제안
2002.10.16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싱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추진하기로 합의
2002.11.14 : 한·싱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 발족에 합의
2003.3.4~6 :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 (서울)
2003.7.29~30 : 공동연구회 제2차 회의 (싱가포르)
2003.9.4~5 : 공동연구회 제3차 회의 (서울)
2003.10.7 : 산·관·학 공동연구회는 6개월간의 활동 종료 후, 조속한 정부간 협상 개시를 건의하는 보고서 제출
2003.10.23 : 싱가포르 국민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 2004년초 협상을 개시, 1년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2004.1.27~29 : 제1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3.24~26 :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4.5.19~21 : 제3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7.21~23 : 제4차 협상 개최(제주도)
2004.9.7~9 :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10.4~8 : 제5차 협상 개최(싱가포르)
2004.10.28~29 : 실무협의 개최(방콕)
2004.11.29 :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싱 정상회의시 FTA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2005.4.16 : 협정문안확정, 가서명(싱가포르)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싱가포르의 수산업 세력이 미약하고 한·싱가포르간 수산물 교역규모도 11백만달러에 불과(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의 0.4%)한 실정이나, 싱가포르의 가공, 중개무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 한·싱가포르와의 교역은 3백만달러 적자(2003년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표-28> 한·싱가포르 주요 수산물 품목별 교역 현황 (2003년 기준)
(단위 : 톤, 천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명	물량	금액	품 목 명	물량	금액
계	1,144	4,161	계	1,679	7,313
굴(건조)	231	2,061	기타 어류 필렛(냉동)	198	2,301
정어리(통조림)	222	442	연어(조제품)	60	1,086
김(조제)	72	251	기타 어류(냉동)	650	874
고등어(냉동)	246	224	열대어(관상용/활어)	17	587
상어 지느러미(건조)	5	192	기타 어육(냉동)	226	386
기 타	368	991	기 타	528	2,07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3) 협상 결과

향후 한·아세안 FTA 등을 고려하여 관세철폐 대상 품목수를 최소화 하는 낮은 수준의 양허 선례를 형성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협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2004년 1월부터 7차례의 협상(공식 : 5회, 비공식 : 2회)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협상 개시 1년만에 타결하였으며,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05년중에 FTA 발

효 예정으로 있다.

협상내용으로는 수산물분야 양허품목을 전체 406개 품목중에서 228개 (56.2%) 양허하기로 하였는데, 싱가포르의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하여 싱가포르의 관심사항을 반영하면서 조정관세 품목 등 우리측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표-29> 한·싱/한·칠레 FTA 수산물 품목별 양허 현황

구 분	한·싱 FTA		한·칠레 FTA	
	개수	(%)	개수	(%)
총 품목수	406개	(%)	406개	(%)
즉시 철폐	56	13.8	277	68.2
5년 철폐	137	33.7	88	21.7
10년 철폐	35	8.6	41	10.0
양허 제외	178	43.8	-	-

자료 :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수산물 품목별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에서 생산이 안되고 수입 실적이 없는 비민감 품목은 즉시 철폐³²⁾하기로 하고, 싱가포르에서 생산이 안되거나 수입실적이 낮은 비민감 품목은 5년(내) 철폐³³⁾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로부터 수입액이 많거나 수입시 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품목은 10년(내) 철폐³⁴⁾하기로 하였다. 양허시 수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되고, 여타 국가와의 FTA 고려하여 민감한 품목(조정관세 품목 등)³⁵⁾은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지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관심사항은 아세안으로부터의 우회적인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원산지 기준규정 설정과 적용이 관

32) 관상어(비단잉어), 송어, 갯장어, 연어, 뱀장어 등 활어, 홍합 등 조개, 냉동 해조류 등 56개 품목(13.8%)

33) 일부 어류·갑각류 냉동품, 염장품, 통조림 등 137개 품목(33.7%)

34) 기타 관상어, 냉동품(다랑어류, 고등어, 대구, 명란, 새우, 문어 등), 취치포 등 35개 품목(8.6%)

35) 양식용 활어 및 패류, 냉동품(대중성 어류, 새우살), 조정관세 대상품목(12개) 등 178개 품목(43.8%)

건이다. 원료 수산물에 해당하는 활어, 냉장·냉동 어패류 및 해조류의 경우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싱가포르가 직접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통조림 등 고차가공 수산조제품은 원료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할 경우 싱가포르 기업이 45%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4) 예상 영향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양허품목의 수입액 비중이 전체 수입액의 24%에 불과하고,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한·싱가포르 FTA가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상어(Ornamental Fish)의 경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비단잉어는 즉시 관세철폐 형태로 시장을 개방하되,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는 열대 관상어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여 영향을 최소화하였다.³⁶⁾

특히, 관상어의 우회수입 차단을 위해 관상어를 양식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되, 알 및 치어를 수입하여 알테미아 등 초기먹이를 먹여 양식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함으로써 일시 축양 등을 통한 원산지 우회수입을 차단되도록 하였다.

조정관세 품목에 해당하는 활농어, 냉동민어, 냉동새우, 냉동명태 등의 12개의 조정관세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민감품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의 양허 제외로 FTA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의 최대(전체 수출액의 30% 차지) 수출품목인 냉동 기타 어류 필레트(Frozen Fillets)를 양허품목에서 제외하였다.

2) 한·ASEAN FTA

(1) 추진 경과

ASEAN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고축동 싱가포르 총리가 2001년 11월과 2002년 11월 두 차례

36) 기타 관상어는 1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추진을 검토해 볼 것을 제의하였고, 한·아세안 정상회의(2003.10.8)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 공동연구를 실시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에 공동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FTA체결시 GDP와 대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관세 유지분야의 관세인하시 교역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농수산업 등의 취약산업에 대한 협상과정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0> 한·ASEAN FTA 협상일지

ASEAN측에서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ASEAN간 FTA 체결을 희망
2003.8.3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연구 제안 결정
2003.10.8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
2004.2.13 SEOM+1 회의(캄보디아)에서 전문가그룹 운영에 관한 terms of reference(TOR) 확정, 아울러 ASEAN측 간사국으로 싱가포르가 지정, FTA 추진
2004.2 전문가그룹 구성 및 상호 통보, 1차 회의에 대비, 의제(안) 발굴 및 ASEAN측 제도와 관행에 관한 질문서 준비, 사전 전달
2004.3.8~3.9 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논의내용 : FTA 협상 적용범위, 협상 방식, 공동보고서 작성 절차 및 시한 등 향후 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2004.4.16~4.17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논의내용 : 한·아세안 무역·투자현황에 대한 개황 및 평가, 한·아세안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평가, 분야별 자유화 가능성 점검 및 이에 대한 양측 입장 교환
2004.6.10~6.11 제3차 전문가회의 개최(싱가포르)
논의내용 : 양측간 무역 자유화·원활화 및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 한·아세안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견 교환, 그 동안 양측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초안의 내용이 검토
2004.7.9~7.10 제4차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논의내용 : 보고서 미진분야 논의, 보고서 최종확정 및 FTA 추진을 양측 정상에게 건의키로 결정
2004.8 제5차 전문가회의 개최(인니 자카르타)
2004.8.21 FTA 실무조정회의
2004.9.4 ASEAN+1에서 공동연구결과 승인 및 정상에게 공식협상 개시 건의
2004.11.30 한·ASEAN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 채택 및 2년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 선언
2005.2.23~25 제1차협상 개최(자카르타)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ASEAN 국가들의 수산물 총수출은 202.5억달러(전체대비 10.4%), 총 수입은 184.6억달러(10.3%)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총교역 비중은 싱가포르(14.0%), 베트남(13.4%), 말레이시아(11.6%), 태국(9.5%)등이다 이 중에서 농림수산물에 대한 비중은 총액대비 수출 0.9%, 수입 10.4% 등이다.

이들 ASEAN 국가중 태국이 세계 최대 수산물 수출국중의 하나일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이 세계 총수산물 수출금액중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입규모를 살펴보면, 총수출 81억달러, 총수입 22.3억달러, 수지흑자 58.7억달러이다.

우리나라와 ASEAN과의 수산물 무역현황에서, 수출은 2003년에 6천만달러로 냉동가다랭이, 냉동고등어, 마른굴 등인 반면, 아세안산 수입은 2003년 2억9천만달러로서 냉동갈치, 냉동새우, 냉동연육 등으로 우리나라와는 수출 2.7억달러(3.3%), 수입 0.54억달러(2.4%), 수지흑자 2.16억달러의 교역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새우류 9,479만달러, 기타 연육(냉동) 4,115만달러, 쥐치포 2,810만달러, 쭈꾸미(1,610만달러), 전갱이(967만달러), 갈치(928만달러) 등이다.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율은 17.5%인데 반하여, 아세안 5% (태국 :계살·연체동물·넙치류 30%), 태국 10%, 필리핀 9%, 인도네시아 5%,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0% 등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31> 한·ASEAN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년도 국가	1999		2000		2001		2002		200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소 계	102,618	62,948	87,165	49,343	69,998	49,877	66,092	51,542	69,646	52,832
	태국	48,860	28,871	44,805	22,691	47,256	32,943	46,295	34,492	55,304	38,354
	싱가폴	2,248	5,459	2,148	4,860	1,922	4,426	2,374	5,470	1,144	4,161
	인도네시아	15,392	8,762	13,387	6,981	9,280	4,628	9,389	4,999	9,355	5,502
	필리핀	34,792	17,866	25,906	13,059	10,382	5,681	6,224	3,659	1,800	1,783
	말레이시아	1,326	1,990	919	1,752	1,158	2,199	1,810	2,922	2,043	3,032
수입	소 계	52,255	117,088	73,630	185,613	101,242	227,970	113,894	248,609	127,749	278,897
	태국	11,786	43,523	18,284	67,750	28,184	83,288	29,106	84,737	34,692	95,616
	인도네시아	14,820	22,962	15,268	28,378	15,206	25,175	13,837	22,718	16,083	26,630
	베트남	20,819	39,549	33,374	72,240	49,107	101,486	61,504	121,733	67,416	129,878
	필리핀	4,830	11,054	6,704	17,245	8,745	18,021	9,447	19,421	9,558	26,773
무역수지		50,363	-54,140	13,535	-136,270	-31,244	-178,083	-47,802	-197,067	-58,103	-226,065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2004

(3) 예상 영향

ASEAN 각국의 수산업과 입지,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우리 양식업(활어, 해조류)에의 영향은 적을 것이나, 반면 냉동품과 건조물(새우, 갈치, 낙지 등)분야는 아세안산 수산물 수입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SEAN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려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입을 확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자본과 산업기술을 자국에 유치하고 아울러 자국산 농수산물을 우리나라에 팔겠다는 것이므로, 농수산물분야에서는 FTA협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형편이다.

현재 ASEAN측은 일부 농수산물의 조기개방(선자유화조치)을 주장하고 아울러 농수산물의 대부분을 완전자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

리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에 있어서는 연근해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산물 진출과 관련해서는, ASEAN은 수산물 관세율이 낮아, 관세 철폐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증가 기대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다랭이 등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편익을 가질 수 있도록 협상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ASEAN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 수산업의 민감성에 대해 이해와 반영을 전제로 양측은 농업·수산부문의 구조적 취약성과 민감성에 주목하고 시장접근 협상시 농수산업 부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을 전제로 한 협상전략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3) 한·일 FTA

(1) 추진 경과

2002년 3월 22일 한·일 정상회담시 양국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중 세 차례(7, 10, 12월)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면서 보완장치도 폭넓게 고려하여야 함과 일본측의 수입수량할당제(IMPORT QUATA : IQ)³⁷⁾ 등 비관세장벽 완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측은 IQ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것이므로 WTO 정신에도 부합하며, IQ를 철폐한다고 하여도 한국보다는 중국 등 다른 국가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03년에는 산·관·학 연구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였고, 2004년에도 한·일 FTA 3, 4, 5, 6차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37) 일본의 FTA 수산물협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일 정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FTA로 일본의 수입수량제한(IQ)이 완화 내지 개선될 경우 대일 수출물량이 180만 속으로 제한된 김과 4,000만 달러로 제한된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꽂치, 패치, 제주, 건멸치, 대구, 가리비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32> 한·일 FTA 협상일지

1998.11	양국 통상장관,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합의
1998.12~2000.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일본 아세아경제연구소 공동연구 시행
2000.5.24	: 한·일 FTA 심포지엄(서울),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결과 발표
2000.9.23	: 양국정상, FTA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 수렴 목적을 위해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를 합의(일본)
2000.9.28	: 한·일 FTA 심포지엄(동경), 민간연구기관간 공동연구결과 발표
2001.5	: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구성, 한국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일본: 우시오전기 회장
2001.9.7~8	: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2.1.25	: 한·일 비즈니스 포럼 제2차 회의 개최(동경), 양국 FTA의 조기 실현 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발표
2002.2.27	: 한·일 FTA 관련 세미나 개최(조선호텔)
2002.3.22	: 양국정상,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설치를 합의
2002.6.27	: 한·일 FTA 세미나 개최(서울)
2002.7.9~10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서울)
2002.10.1~2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2차 회의(동경)
2002.12.4~5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3차 회의(부산)
2003.2.6~7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4차 회의(동경)
2003.4.14~15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5차 회의(서울)
2003.5.22	: 한·일 FTA 종합토론회(코엑스)
2003.6.7	: 노무현 대통령 방일시, 조속한 시일내에 한일 FTA 협상개시에 합의
2003.7.11~12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6차 회의(일본 후쿠오카)
2003.9.2~3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7차 회의(서울)
2003.9.19	: 한·일 FTA 공동연구회 최종 보고서 문안 협의(동경)
2003.9.30	: 한·일 FTA 세미나(전경련회관)
2003.10.2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8차 회의 및 최종보고서 채택(서울)
2003.10.20	: 양국정상, 정부간 공식 협상개시 합의(방콕)
2003.12.22	: 한·일 FTA 제1차 협상(서울)
2004.2.23~25	: 한·일 FTA 제2차 협상(동경)
2004.4.26~28	: 한·일 FTA 제3차 협상(서울)
2004.6.23~25	: 한·일 FTA 제4차 협상(동경)
2004.8.23~25	: 한·일 FTA 제5차 협상(경주)
2004.9.1, 9.4	: 한·일 FTA, 중소기업지방설명회(광주, 대전)
2004.11.1~3	: 한·일 FTA 제 6차 협상(동경)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일본과의 수산물 무역현황을 보면, 수출은 2004년에 8억4천만달러이고, 주력 수출품목은 참치, 붕장어, 넙치, 굴, 미역 등 다양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본산 수입은 2004년 1억8천만달러로서 신냉명태, 활돔, 신냉갈치, 멧게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33> 대일본 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분	2002		2003			2003. 11월말		2004. 11월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년 대비
수출	179,069	823,117	150,156	740,447	84%	134,967	660,265	141,075	746,495	113%
수입	74,536	146,497	69,257	148,699	102%	59,834	130,816	93,459	159,379	122%
수지		676,620		591,748			529,449		587,116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KMI

<표-34> 한·일 수산물 주요품목별 수출입 현황(2004.11월말)

(단위 : 톤, 천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물량	금액	전년 대비	품목명	물량	금액	전년 대비
	계	141,075	746,496	113%	계	93,459	159,379	122%
1	눈다랑어(냉동)	16,742	106,973	120%	명태(신냉)	14,780	31,285	101%
2	황다랑어(냉동)	18,328	53,726	104%	갈치(신냉)	3,985	15,571	215%
3	넙치(활어)	4,064	49,151	118%	돔(활어)	2,316	14,958	128%
4	기타어류피레트(냉동)	5,726	43,399	130%	명태(냉동)	21,476	12,897	270%
5	캐비아대용물	2,738	40,672	92%	기타어류(신냉)	2,890	5,463	121%
6	게살(통조림한제 제외)	3,015	32,521	126%	우렁챙이(활신냉)	7,028	5,033	177%
7	돔(건조)	3,821	26,397	82%	기타어류(냉동)	7,928	4,840	69%
8	굴(냉동)	5,314	25,833	130%	고등어(냉동)	6,718	4,794	3,694%
9	붕장어피레트(냉동)	2,665	24,758	102%	먹장어(활어)	547	4,198	110%
10	바지락(활신냉)	8,608	20,941	117%	고등어(신냉)	2,524	3,958	전년도 수입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KMI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수출시장³⁸⁾으로, 2001년 기준 수산물 총수출액 12.7억달러중 9.2억달러(73%)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참치(226백만달러), 굴(83백만달러), 봉장어(73백만달러), 캐비아(48백만달러), 피조개(42백만달러), 넙치(39백만달러), 톳(30백만달러) 등이며, 우리 수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약 7% 이다.

<표-35>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출 비중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전체 국가 수출		일본 수출		비중(%)	
	물량(A)	금액(B)	물량(C)	금액(D)	물량(C/A)	금액(D/B)
2000	533,824	1,504,470	215,479	1,125,248	40.4	74.8
2001	435,691	1,273,619	179,335	924,873	41.2	72.6
2002	429,884	1,160,435	179,069	823,117	41.7	70.9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KMI

2001년 기준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1.4억달러로 전체 수입액 16.5억달러의 8%를 차지(중국, 미국, 러시아에 이어 4위)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명태(32백만달러), 갈치(14백만달러), 돔(12백만달러), 참치(8백만달러), 꽁치(7백만달러), 어란(4백만달러), 농어(3백만달러) 등이다.

<표-36>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산물 수입 비중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전체국가		일본 수입		비중(%)	
	물량(A)	금액(B)	물량(C)	금액(D)	물량(C/A)	금액(D/B)
2000	749,191	1,410,598	67,741	185,110	9.0	13.1
2001	1,056,252	1,648,372	69,679	139,129	6.6	8.4
2002	1,186,400	1,884,417	74,536	146,497	6.3	7.8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KMI 관련자료 참고

38) 수출비중 : 65.2% (746백만달러/1,145백만달러), 수입비중 : 7.8% (159백만달러/2,039백만달러)

* 2004.11월말 기준

(3) 예상 영향

한·일 FTA 체결로 수산물 관세(우리나라 18%, 일본 7.5%)를 0%로 인하할 경우 수출은 25백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6백만달러가 증가하여 우리나라가 유리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1998년 기준. 주요 거대 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 수산업 부문. KMI) 수출증대 예상품목은 참치, 굴, 톳, 활넙치, 활붕장어 등이며, 수입 증대 예상 품목은 활돔, 활농어, 갈치 등이다.

한·일 FTA로 일본의 수입수량제한(IQ)이 완화 내지 개선될 경우, 대일 수출물량이 180만 속으로 제한된 김과 4,000만달러로 제한된 방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꽂치, 패주, 건멸치, 대구, 가리비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³⁹⁾은 1999년 7.3%에서 2000년 7.2%, 2001년 6.8%로 다소 하락 추세에 있으나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과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흑자이나 그 폭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현재 60%의 조정관세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활돔과 활농어 등 고가어종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양식어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타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장축소 및 일본의 발달된 수산물 가공기술 등을 감안할 때 한·일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예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산부문에서의 일본과의 FTA 체결의 득실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상당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대감이라는 것은 일본은 세계 제1위 수산물 수입국(연간 150억달러)이면서도 일본은 수산물에 대해 강력한 수입규제조치(IQ제도 위생검역)를 강구하고 있으므로, 만약 FTA상대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러한 수입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FTA체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예컨대 일본산의

39) 중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 : '99: 14.2% → '00: 15.4% → '01: 16.4%)

고급이미지, 우리나라의 8배에 달하는 광대한 바다, 연근해 어업에서의 일본의 비교우위 등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일본산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의 IQ제도와 관세철폐시 김을 비롯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은 1.5억달러 더 증대할 것이나, 반면 우리나라의 관세(평균 18%)도 철폐해야 하므로 관세가 높은 활선어 중심으로 일본산 수입도 7천만달러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쪽에 매년 8천만달러의 무역흑자가 기대된다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도 있다.

한편 일본측 수산부문 FTA체결의 득실평가를 보면, 대체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큰 것 같고, 지금까지 일본측 입장은 “수산물은 가능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유화할 필요가 없다”는 기회주의적 자세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수산물 없는 공산물만의 FTA는 체결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 일본이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시해야 FTA협상 재개에 응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의 효과가 산업분류상 생산, 부가가치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업종을 보다 세분하여 영향을 분석한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시적 차원의 업종별·어종별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주요한 수입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입할당(import quota)등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한·일 FTA 체결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4) 한·중 FTA

(1) 추진 경과

20세기 중반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으며, 21세기에 들어서도 중국경제의 급팽창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세계무역환경은 다자와 양자의 양

방향에서 양자와의 지역적 블록화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근거리에 있으며,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국익을 도모할 묘책을 강구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중국은 2002년 11월 프놈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후 2003년 7월초 대통령 방중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에 노력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 후로 2004년과 2005년도 각각 공동연구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아 지역내 FTA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다분히 일본을 의식한 국제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수산물 교역측면에서 한·중 FTA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참여인구나 생산량 모두 감소하는 국면에 있으나 중국은 확대일로에 있으며 수출입 모두에서 양적으로나 가격적으로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무관세적인 일반적 경쟁으로는 당연, 불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전체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협력을 모색해야 하기에 수산업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전체산업적인 측면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37> 한·중 FTA 협상일지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년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간 공동연구 개시, 향후 2년간 추진예정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은 연간 54억달러 이상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이며, 약 20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연간

약 35억달러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다.

중국 수산물 수출의 2003년 품목별 구조를 보면, 수산물 조제품(HS 1604, 1605)에서 19.2억 달러가 수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어육·필레트(HS 0304)가 11.6억달러에 달하여 전체 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2개 품목군에서 차지하고 있으며, 두 품목군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2억 달러에 달한다.

거의 모든 수산물 품목군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명태와 대구 등 한류성 냉동어류를 포함하는 HS 0303 품목에서는 7.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어류(HS 03) 수출입을 교역상대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일본에 대하여 2003년중 10.5억 달러를 수출하고 1.2억달러를 수입함으로써 9.3억달러의 수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대하여 각각 연간 6~7억달러의 어류를 수출하여 각 5~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총 9.3억달러의 수산물 무역흑자를 시현하였다.

일본, 한국, 미국 등 3개 국가와의 교역에서만 약 2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낳은 반면 중국은 한류성 어족을 많이 수출하는 러시아 및 북한,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각각 6.6억달러, 1.9억달러, 0.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시현하였다.

<표-38> 한국의 국가별 수산물 무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도 국가	2000			2001			2002			2003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일 본	1,125	185	940	925	139	786	1,125	216	607	740	491	599
중 국	84	487	-403	56	634	-579	84	720	-672	71	714	-643
미 국	79	145	-67	82	159	-76	79	174	-96	80	153	-78
태 국	23	68	-45	33	83	-50	23	85	-51	38	96	-58

자료 :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2004), 해양수산부.

<표-39> 대중국 수산물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HS 코드 (품목)	2001			2002			2003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0301 (활어)	166	12	154	169	17	152	221	13	208
0302 (신선냉장어류)	139	13	126	155	21	134	185	43	142
0303 (냉동어류)	530	853	-323	485	1,004	-519	454	1,195	-741
0304 (어육, 필레트)	789	39	750	929	23	906	1,163	29	1,134
0305 (건조염장 등 어류)	101	28	73	133	35	98	156	37	119
0306 (갑각류)	402	194	208	443	191	252	615	288	327
0307 (연체동물 등)	467	193	274	562	273	289	543	262	281
121220 (해초)	86	13	73	95	15	80	96	20	76
1604 (가공어류)	858	3	855	866	2	864	823	3	820
1605 (기타가공수산물)	568	3	565	762	7	755	1,101	16	1,085
7101 (진주)	22	10	12	31	9	22	66	14	52
소 계	4,128	1,361	2,767	4,630	1,597	3,033	5,423	1,920	3,503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국가간 교역에서 중요한 한·중 수산물 관세율의 수준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높으나, 신선·냉장 어류, 신선·냉장 어육 필레트, 건조·훈제·염장 등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0%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 수준이 20% 이내인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어류 등의 엑기스와 즙(HS 1603-00)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은 30% 수준이어서 24.1%인 중국보다도 높다.

둘째,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HS 4자리 혹은 HS 6자리 품목군별로 3, 5, 8, 10, 20%로 단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품목군의 개별 품목별로 비교적 다양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HS 0301~ 0307까지의 어류에 있어 중국은 어종별로 차별적인 관세율을 정하여 해당 어종의 국내 생산여건과 시장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경우 일부 양식용 치어(HS 0301중 일부)와 양식·방류용 새우(HS 0306-22-111)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수산물에 대한 무관세 품목이 없다.

(3) 예상 영향

한·중 FTA에서 어종별 영향을 포획어종의 위판단가와 관세율, 수입 단가 등을 고려하여 파악한 관세철폐시의 영향은 전체 금액면에서 멸치, 오징어, 갈치, 삼치 등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붉은대게, 키조개, 멍게, 강달이 등은 2003년의 경우 수입실적이 없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0> 어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정도

(단위 : 백만원)

어 종	감소정도	어 종	감소정도	어 종	감소정도	어 종	감소정도
가자미	☆☆	꽃새우		민 어	☆	아 귀	☆
갈 치	☆☆☆	낙 지	☆	방 어	☆☆	오징어	☆☆☆☆
강달이		눈볼대		병 어	☆☆	옥 돔	☆
개량조개	☆	대 게		복 어	☆	전갱이	☆
고등어	☆☆	대 구	☆	붉은대게		젓새우	
기타새우	☆	도루묵		붕장어	☆☆	조 기	☆☆
기타어류	☆☆☆	멍 게		삼치류	☆☆	꾸꾸미	☆
기타패류	☆☆	멸 치	☆☆☆☆☆☆	성 게	☆	키조개	
꽃 게	☆☆	문 어	☆	소라고둥	☆	해 삼	☆

* ☆ 표시가 많을수록 생산자 잉여의 감소정도가 크다.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또한 업종별 어종의 혼획율을 기초로 어업별 생산자잉여의 감소수준을 살펴보면, 규모면에서는 기선권현망, 대형트롤, 쌍끌이대기저,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잉여의 감소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선권현망어업, 근해안강망, 쌍끌이대기저, 근해자망, 대형트롤, 근해채낚기어업 등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41> 근해어업 업종별 생산자잉여 감소수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어 획 량	위 판금액	생산자잉여 감소규모	감소비율
쌍끌이대기저	62,740.0	147,083	☆☆☆☆	☆☆☆
외끌이대기저	6,746.0	20,958	☆	☆☆☆
대형트롤	116,559.0	178,049	☆☆☆☆	☆☆☆
동해구기저	6,586.0	21,185	☆	☆
서남구기저	15,666.0	61,834	☆☆	☆
동해구트롤	27,202.0	49,665	☆☆	☆☆☆
대형선망	158,662.0	201,988	☆☆☆	☆
기선권현망	133,954.0	170,657	☆☆☆☆☆	☆☆☆☆☆
근해통발어업	35,414.0	188,186	☆☆	☆
잠 수 기	11,400.0	41,180	☆☆	☆☆
근해안강망	40,887.0	62,854	☆☆☆	☆☆☆☆
근해채낚기	73,802.0	110,044	☆☆☆	☆☆☆
근해자망	29,690.0	84,057	☆☆☆	☆☆☆
근해연승어업	14,755.0	45,627	☆☆	☆☆☆

* ☆ 표시가 많을수록 생산자 잉여의 감소정도가 크다.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우리나라가 FTA 체결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에 있다.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증가해야 하나, 생산량의 감소로 수출여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까지 없는 대중국 FTA는 피해만 발생하는 협상이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피해방지책 또는 지원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FTA는 농업부문과 공조하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FTA에서 특히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종(갈치, 멸치, 오징어, 삼치, 붕장어, 병어, 고등어 등) 및 업종(기선권현망, 대형트롤, 쌍끌이대기저,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등)을 중심으로 관세양허 준비 및 업종별 영향에 따라 구조조정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칠레,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FTA와는 달리, 중국과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WTO/DDA 협상과 함께 향후 추진될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대책 후개방」의 기본원칙 아래 획기적인 어업인 지원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칠레 FTA에서와 같이 향후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도 충분한 양허기간의 확보, 유예품목의 확대 등 수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FTA이행 특별법의 개정으로 수산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반영되어 수산발전기금의 획기적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유럽지역

1) 한·EFTA FTA

(1) 추진 경과

2004년 5월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FTA간 FTA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FTA 로드맵 확정)하고, 2004년 5월 14일 OECD 각료회의시 EFTA측과 한·EFTA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8월 11~13일 기간중 개최된 제1차 공동연구회를 개최(스위스 EFTA 사무국)하여 정보교환, 한·EFTA간 FTA를 통한 무역·투자,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을 논의하였고, 우리나라 수산업 현황(취약성·민감성) 발표, 한·EFTA간 FTA 관련사항 논의, 기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4년 10월 13~15일 기간중 개최된 제2차 공동연구회를 개최(서울 외교부)하여 공동연구보고서(안) 검토, 향후 FTA협상 추진방향 협의, 수산물에 적용할 협상원칙 권고, 양측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부속서에서 취급하기로 하였으며, 수산자원의 이용(입어)에 대한 안전은 FTA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42> 한· EFTA FTA 협상일지

2004.5.14 : OECD각료회의 계기로 개최된 한· EFTA 통상장관회담시 한· EFTA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2004.8.11~13 : 한· EFTA FTA 공동연구 제1차회의 개최(제네바)
2004.10.13~15 : 한· EFTA FTA 공동연구 제2차회의 개최(서울)
2004.11.12 : 한· EFTA FTA 공청회 개최(서울 무역센터)
2004.12.16 : 한· EFTA FTA 통상장관회의시 FTA 협상개시 공동선언(제네바)
2005.1.18~21 : 한· EFTA FTA 제1차 협상 개최(제네바)
2005.4.4~8 : 한· EFTA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5.5.30~6.2 : 한· EFTA FTA 제3차 협상 개최(노르웨이)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EFTA 회원국중에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넓은 EEZ를 갖고 있으며, 수산자원 관리, 자원관리형 어구의 개발·이용, 어업생산관리(TAC, ITQ), 연어양식기술 등 선진어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 선진국이다.

이러한 EFTA 수산물 생산국중에서 가장 선진국중의 하나인 노르웨이의 어업생산은 274만톤(세계 10위), 주요 생산어종은 연어, 청어, 대구, 고등어 등(양식생산은 55만톤, 세계 7위)이며, 아이슬란드의 수산물 생산량중 어업생산은 213만톤(세계 11위), 주요 생산어종은 대구, 빙어, 청어, 넙치, 새우류 등이다.

노르웨이의 수산물에 대한 수출규모는 35.7억달러(3위)이며, 전세계 수산물 수출액의 7%를 담당하고, 주요 수출품목은 연어, 대구, 고등어, 송어, 청어 등이며, 아이슬란드의 수산물의 수출규모는 14.3억달러(13위)이며, 전세계 수산물 수출액의 2.8%를 담당하고, 주요 수출품목은 대구, 빙어, 알(캐비어 대용품)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EFTA와의 수산물 교역은 28백만달러(수출 1.5, 수입 27)로서 전체교역량 3,174백만달러의 0.9%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산물 수출은 1.5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11억달러)의 0.1%를 차지하고, 수산물 수입은 27.5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입액(19억달러)의 1.4%를 차지하여, 전체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26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대노르웨이에 대한 수산물 교역은 26.5백만달러로서 전체 교역량의 0.8% 차지하고, 수산물 수출은 1.3백만달러로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은 25.2백만달러로서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1.3%를 차지하여 수산물 적자액은 대EFTA 수산물 무역적자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이슬란드에 대한 수산물 교역은 2.4백만달러로서 전체 교역량의 0.1% 차지하며, 이중 수산물 수출은 0.1백만달러로서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은 2.3백만달러로서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0.1%를 차지하여 아이슬란드 수산물에 대한 적자액은 대EFTA 수산물 무역적자의 8%를 차지하고 있다

<표-43> 한·EFTA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 천달러)

4개국	2001		2002		2003		무역수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계	4,037	29,759	4,189	29,001	1,491	27,485	△25,994
노르웨이	3,705	26,485	4,065	26,152	1,265	25,229	△23,964
아이슬란드	299	2,605	61	2,757	147	2,249	△2,102
스 위 스	33	669	63	92	79	7	72
리히텐슈타인	-	-	-	-	-	-	-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한·EFTA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오징어(냉동), 생선묵(게맛), 굴(냉동) 등이며, 수입품목으로는 고등어(냉동), 대서양 연어(냉동), 태평양 연어(냉장), 송어(냉동), 캐비아 대용물, 기타 어류(냉동) 등이며,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품목은 냉동오징어, 생선묵(게맛)이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냉동고등어, 냉동연어이며, 아이슬란드의 주요 수출품목은 정어리가 소량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캐비아대용품, 볼락 등이다.

<표-44> 한·EFTA 주요 품목별 교역 현황(2003년)

(단위 : 톤, 천달러)

국 가	수 출			수 입		
	품 목 명	물 량	금 액	품 목 명	물 량	금 액
노르웨이	계	1,146	1,265	계	11,526	25,229
	오징어(냉동)	810	450	고등어(냉동)	7,747	10,014
	생선묵(게맛)	284	482	대서양 연어(냉동)	2,139	7,943
	굴(냉동)	5	28	태평양 연어(신선냉장)	892	4,887
	넙치(냉동)	47	305	기타 연어류(냉동)	238	833
				어류의 유지 분획물	278	601
				연어(통조림외조제)	17	196
				송어(냉동)	46	165
				기 타	169	590
		계	90	147	계	1,223
아이슬란드	정어리(밀폐)	90	147	캐비아 대용물	422	1,038
				볼락(적어포함(냉동))	492	695
				어류의 유지	117	261
				어란(명란냉동이 외 기타/피레트,어육제외)	98	137
				기타 연육(냉동)	24	45
				기타 어류(냉동)	16	27
				기 타	54	46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무역협회 수출입동향 참고

또한 한·EFTA 수산물 관세율 체계를 비교해 보면, EFTA 국가의 수산물 관세는 매우 낮으며, 어류(HS 03)는 무관세(스위스는 0.2%)이며, 노르웨이의 경우는 수산물 품목 254개, 수산물 평균관세율 3.3%, 아이슬란드는 수산물 품목 371개, 수산물 평균관세 1.7%를 적용하고 있다. EFTA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살펴보면, 연어(신선, 냉장 : 20%, 냉동 : 10%, 훈제 : 20%), 고등어·송어(신선, 냉장 : 20%, 냉동 : 10%), 알(캐비아 대용물, 20%), 기타 냉동 어류(10%)를 적용하고 있다.

대EFTA 수입수산물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품목 대량수출이라는 것인데, EFTA의 경우 수출 수산물의 종류는 단순하나 품목이 집중된 형태라는 것이며, EFTA 국가의 주력 수출품의 국내시장 지배력 높다는 것이다. 연어 및 연어 가공품은 국내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어분, 고등어, 알(캐비아 대용물)은 20~50%를 점유하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고가의 수산물이라는 것인데, 수입되는 연어, 알(캐비아 대용물), 고등어 등은 국내시장에서 비교적 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해양 조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여 우리나라 식품기호와 유사한 수산물 생산(예 : 고등어)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예상 영향

한·EFTA에 체결에 따르는 대 EFTA 수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관세인하효과로 인하여 EFTA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 EFTA 주요 수입품목인 연어, 고등어의 관세가 높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관세 양허시 수입급증 예상되며, 특히 대중성 어종 및 연근해 대표생산 어종인 고등어의 경우, 연근해어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국내산 고등어 보다 맛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FTA 수산물 및 가공제품의 신규 수입이 예상되는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주력 수출품목 중에서 관세양허시 대구류, 청어, 어류 필레트, 새우 등의 국내시장 신규 진출 예상 및 가공 수산물의 수입증대 우려가 있다.

한·EFTA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증대 가능성에 대하여는 EFTA의 수산부문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FTA체결 이후 관세철폐로 인한 수산물의 수출증대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경쟁력이 높은 수산선진국이고 소비인구가 적은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3. 미주지역

1) 한·미 FTA

(1) 추진 경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칠레, 싱가포르보다 시장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여 아직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대상국가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미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칠레 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아울러 일본, 아세안과의 FTA논의가 가속화 될 경우 미국 행정부와 업계도 한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르와 한국을 가장 적합한 FTA상대국으로 평가한 바 있으므로 미국의 FTA체결 확대에 대비해 공식, 비공식 외교채널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표-45> 한·미 FTA 추진 일지

2004.05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관심 표명 이후 주한미대사 등 관계인사 수차례에 걸쳐 관심 표명
2004.11 : 양국 통상장관 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 실무점검회의 개최 합의
2005.02.03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03.28~29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미국,워싱턴)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수산물 무역관계를 보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다소 감소했지만, 이전까지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와 원양어업의 외국으로부터의 어획 할당량 감소에 따라 이들 어종을 대체할 수 있는 어종, 명태, 고등어, 대구, 아귀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 수입 수산물인 명란의 경우 수입금액이 2000년 3천6백만달러에서 2003년 1억4천만달러로 무려 292% 증가했고, 명태는 5천9백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약 69%, 아귀도 1천3백만달러에서 2천2백만달러로 69% 증가, 대구는 5백만달러에서 1천7백만달러로 240%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미국 수산물 수입현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미국시장에서의 수입 수산물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부분의 수산물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생산량 증대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수출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인 굴류의 경우, 중국의 수출량이 증가했고, 게살류도 캐나다와 중국의 수출량이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요 수출 수산물과 이들 국가들의 수산물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한국의 대미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총수출	대미수출	비율	총수입	대미수입	비율
2000	1,504,470	78,712	5.2	1,410,598	145,366	10.3
2001	1,273,619	82,210	6.5	1,648,372	158,520	9.6
2002	1,160,435	77,625	6.7	1,884,417	173,774	9.2
2003	1,129,385	80,385	7.1	1,961,145	152,677	7.8

자료 : KMI 해양수산 동향

<표-47> 한국의 대미국 수산물 수출입 상위 품목(2003년도)

<단위 : 천달러>

번호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훈제 굴 통조림	13,240	명란(냉동)	141,092
2	굴 통조림	8,278	알래스카 명태 연육	99,764
3	해조류	6,111	아귀(냉동)	21,857
4	오징어(냉동,건조,염장)	5,524	대구(냉동)	16,736
5	양식 굴(산것, 신선,냉장)	3,015	연육	14,832
6	오징어(조미)	2,711	바다가재(산 것,신선)	9,763
7	자연산 굴(산것,신선,냉장)	2,459	식용 피쉬밀	8,653
8	피쉬볼,케이크 푸딩 등	1,711	고등어(냉동)	6,871
9	어류(건조)	1,402	장어(냉동)	4,837
10	게살(기타)	1,283	대구(신선)	4,026
11	게살(냉동)	989	아귀(신선)	3,472
12	어류(냉동)	778	연어알(냉동)	3,424
13	캐비어대용품	673	명태(냉동)	3,028
14	고등어(염장)	430	어류간유	2,741
15	가다랭이(신선)	388	연어(냉동)	2,501

자료 : KMI 해양수산 동향

(3) 예상 영향

미국시장에 대한 주요 수산물 수출감소와 대미수입 증대에 따라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2002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었는데, 이는 2002년도 미국 FDA 수입검사 강화로 출하되지 못했던 대미 수출권이 2003년도 집중 출하되어 굴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 연근해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원양어획량 감소와 명태 등에 대한 외국으로부터 어획 할당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비중은 그리 크지 않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수출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미 수산물 시장에서 각 국가의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교우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 시장집중도(RMI)에 대한 지수를 산정해본 결과,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이 비교열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미국 수출 수산물은 RMI 지수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산물 생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지 않는 수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미 수산물 수출입 상위품목에 훈제 또는 굴 통조림이 압도적으로 우점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명란과 명태연육이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한 FTA 협정으로 인한 영향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수산물시장은 개방이 많이 되어 있고, 관세율도 낮아서 여러 요인을 감안한 단계별 FTA 체결을 할 경우에 영향과 산업 전반의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 해양수산 통권 제239호(KMI 발간, 2004. 8)

2) 한·캐나다 FTA

(1) 추진 경과

2004년 11월 APCE 회의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FTA 예비협약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가능한 2005년 3월까지 예비협약을 종료하고, 5월부터 연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정부간 협상 개시하기로 하였다.

<표-48> 한·캐나다 FTA 협상일지

2004.05.10 :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 추진로드맵상에 캐나다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에 포함
2004.11 :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예비협약 개최에 합의
2005.01.25~26 : 1차 예비협약 개최 (서울, 양국의 FTA정책 및 협정문 각 chapter별 구성요소 등에 대해 협의)
2005.03.31~04.01 : 2차 예비협약 ⁴¹⁾ 개최 예정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먼저 캐나다의 어업생산량('02, FAO)은 101만톤(세계 21위)이며, 주요 생산 어종은 청어, 게류, 새우류이며, 수산물 수출입 규모('02, FAO)는 30억달러(세계 5위)로 세계 수산물 수출액의 5.2%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연어, 바다가재, 어류필레트, 게류, 새우류 등이다.

수산물 수입은 13.5억달러(세계 12위)로 세계 수산물 수입액의 2.2%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참치, 새우류, 바다가재, 넙치류 등이다.

캐나다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원료수산물(03류)에 대하여는 대부분 0%이며, 가공수산물(15류, 16류)은 0~10%로 전체 수산물 평균 실행관세

41) 예비협약의는 공동연구와 달리 정부대표만이 참석했다.

을 1.0%이다⁴²⁾.

한·캐나다 양국 수산물 교역은 59백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량 3,091백만달러의 1.9%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는 8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11억달러)의 0.7%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은 굴통조림, 냉동오징어, 조미김 등이다. 수산물 수입은 51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입액(19억달러)의 2.6%를 차지하며, 주요품목은 바다가재, 냉동연육, 냉동아귀 등이다. 대캐나다 수산물 무역수지는 43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수산물 적자액(832백만달러)의 5.2% 점유하고 있다.

<표-49> 한·캐나다 수산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수 출	2,790	10,821	7,559	10,058	4,088	8,011
수 입	8,452	24,924	14,824	43,178	15,108	51,355
수 지	-	△14,103	-	△33,120	-	△43,344

자료 : 해양수산물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수산물 교역품목의 특징으로서, 대캐나다 수산물 수입은 바다가재(냉동제외) 외에는 대부분 냉동수산물 중심의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활바다가재(45%)와 연육, 아귀 등 냉동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수출도 굴통조림(25%), 냉동오징어(18%), 조미김(15%) 등 일부품목 위주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42) WTO 평균 양허관세율 1.3%, 100% 양허(우리나라 수산물 평균관세율 18.2%)

<표-50> 한·캐나다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3년 기준)

(단위 : 톤, 천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명	물 량	금 액	품 목 명	물 량	금 액
합 계	4,088	8,011	합 계	15,108	51,355
굴(통조림)	363	2,032	바다가재(냉동제외)	1,322	23,164
오징어(냉동)	2,133	1,474	기타연육(냉동)	3,461	5,632
김(조제식용해초류)	462	1,208	아 귀(냉동)	1,739	5,275
홍합(통조림)	84	405	기타새우(냉동)	2,226	4,911
생선묵(기타)	142	316	바다가재(냉동)	80	1,626
미역(염장)	144	294	홍어(냉동)	781	1,485
멸치(건조)	93	225	떡장어(냉동)	761	1,227
기 타	667	2,057	기 타	4,738	8,035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3) 예상 영향

한·캐나다 FTA 의한 수산물 수출입 교역에서의 영향을 분석하여 보면, 먼저 수출측면에서 보면, 캐나다는 이미 실행관세율이 1%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개방이 된 상태이고 생산량 정체로 추가적인 수출 확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캐나다의 주 수입품인 참치 및 넙치도 우리나라의 냉동품은 수출이 전무하고, 가공품(참치)도 57,310달러에 불과하여 수출가능성이 희박(이미 무관세)한 상태이다.

다만, 수산가공품의 경우는 최고 10%의 관세가 아직 부과되고 있어 FTA체결시에 굴통조림, 조제김, 홍합, 통조림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출가능성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한·캐나다 FTA 의거 수산물 교역에 있어 수입측면을 살펴보면, 바다가재의 경우, 2003년 수입액의 48.3%를 차지(전체 바다가재 수입의 86.7%)하는 상태에서 기본관세율 20%의 고관세 품목이므로 수입급증 우려되며, 떡장어(대캐나다 18.4%), 아귀(9.7%), 홍어(6.6%) 등도 상당한 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품목은 수입액이 많은 품목이나 대캐나

다 수입비중이 낮고, 기본관세율이 10%로서 바다가재보다 낮아 수입급증 우려는 적으나 먹장어를 중심으로 급증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3) 한·멕시코 FTA

(1) 추진 경과

멕시코는 북미와 중미를 연결하는 곳에 위치하여 이들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수출대상지역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는 32개 국가와 10여 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일본, 싱가포르과도 추진중이다. NAFTA, 멕·EU FTA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2003년 이후에는 우리 수출품의 경쟁조건 약화가 예상된다.

2002년 2월 한국, 멕시코간 경제차관 간담회에서 양국간 FTA 추진이 결정된 이후 2004년 4월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동연구가 실시된 바 있다. 앞으로 공동연구를 계속하여 FTA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주로 진출해 있는 마킬라도라(무관세 보세가공지역)가 2001년부터 폐지되면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규투자에서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FTA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멕시코 경제에서 농업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한·멕시코간 전반적인 교역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교역이 미미하며, 오히려 축소되는 경향이다. FTA 체결시 멕시코로부터의 민감한 농산물 수입 급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⁴³⁾

43) 대 멕시코 수입에서 농산물 비중은 1995년 10%에서 2000년 4%로 낮아졌다.

<표-51> 한·멕시코 FTA 협상일지

2000.5 : 제5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민간협력 강화, 투자 보장협정 체결, FTA 연구라는 3단계 FTA 추진방안 합의
2000.11 : 투자보장협정 서명(2002.8 발효)
2002.7 : 제6차 한·멕시코 경제공동위에서 FTA개별 타당성 연구 합의
2003.5 : 우리측 연구결과에 대한 멕시코 현지 설명회 개최
2003.11 : 고건 총리 Fox대통령 예방계기 FTA 공동연구 실시 제의
2003.11 : 멕시코 FTA 모라토리움 선언
2004.4 :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전문가그룹 (Korea-Mexico Joint Experts Group on the Strengthening of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구성 합의
2004.5 : OECD 각료회의계기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전문가그룹 운영방안 합의
2004.10 :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1차회의 개최(서울)
2004.12 :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2차회의 개최(멕시코)
2005.3 : 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제3차회의 개최(서울)

자료 : 외교통상부

(2) 수산물 교역

멕시코의 어업생산량(2001, FAO)은 140만톤(세계 16위)이며, 주요 생산 어종은 정어리, 황다랑어, 오징어류 등이며, 이중에서 양식생산은 8만톤(세계 25위)이다.

멕시코의 수산물 수출입 규모(2001, FAO)중 수출규모는 6.7억달러(세계 25위)로 대세계 수산물 수출액의 1%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굴(통조림), 갑각류·연체동물, 홍합(통조림), 어분 등이며, 수산물 수입은 1.7억달러(세계 31위)로 대세계 수산물 수입액의 0.3%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멕시코의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원료수산물(03류)에 대하여는 대부분 30%, 가공수산물(15류, 16류)은 23%, 어분(18%) 등에 대해서 높은 관세율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산물의 기본평균 관세율은 19.9%이다.

한·멕시코 양국의 수산물 교역은 17백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량 3,091백만달러의 0.5%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부문에는 1.6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11억달러)의 0.2%를 차지하며,

주요품목은 굴통조림, 홍합통조림, 냉동오징어 등이며, 수산물 수입부문은 15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입액(19억달러)의 0.8%를 차지하고, 주요 품목은 조미오징어, 냉동정어리, 냉동꽃게, 기타연체류(통조림)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산물 무역수지는 13백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52> 한·멕시코 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2001		2002		2003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수 출	486	1,127	242	586	1,730	1,593
수 입	18,272	16,514	17,532	18,806	15,764	15,040
수 지	-	△15,387	-	△18,220	-	△13,447

자료 :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수협중앙회, 산업자원부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산물 수입은 원료수산물은 거의 없고, 일부 가공수산물을 중심으로 편중 수입되고 있으며, 기타 연체동물(통조림), 조미오징어가 80%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품목에는 어분, 굴통조림, 냉동오징어 3종이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다양화되지 않고 일부 품목에 집중된 수출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53> 한·멕시코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2003년 기준)

(단위 : 톤, 천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명	물 량	금 액	품 목 명	물 량	금 액
합 계	1,730	1,593	합 계	15,764	15,040
굴(통조림)	50	334	조미오징어	4,102	5,632
홍합(통조림)	8	41	정어리(냉동)	4,325	1,269
어 분	1,404	777	꽃게(냉동)	86	199
오징어(냉동)	230	247	기타연체류(통조림)	5,163	6,249
김(마른 것)	5	83	오징어(염장)	884	646
연어(통조림)	27	56	민어(냉동)	373	363
			오징어(통조림)	155	178
기 타	6	55	기 타	676	504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4

(3) 예상 영향

한·멕시코간 FTA 체결에 있어서 예상영향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멕시코는 NAFTA 등 세계 다양한 국가와 여러 종류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데 이는 미국과의 연계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FTA 추진전략도 미국과 미주국가의 수출전진지구축과 미국시장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 발효중에 있고 미국진출 또한 무역장벽이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수산부문에 대해서는 전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고 국가 전체 산업측면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대멕시코와 수산물 교역은 17백만달러로 전체 수산물 교역량의 0.5%, 전체 수산물 수출 11억달러의 0.8% 차지하여 13백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 수출입 품목도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교역량도 적으며, 관세율도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건대 전반적으로 수산부문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역품목에 대해서도 원재료가 아닌 조미성 품목의 비중이 높고 그 전체적인 양도 소량이므로 큰 고려사항은 안 될 것으로 보이나 우회수출 등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제1절 FTA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주요 쟁점

전술한 바와 같이 FTA 체결은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관세 및 수입제한 요소를 철폐함으로써 통상을 자유화하려는 무역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국제적 분업의 확대를 통한 상호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가 추구하는 이론적 가치가 대상국간의 산업·경제적 여건이나 산업·문화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당사국간에 반드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체결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수산부문에 제기될 수 있는 주요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세계적으로 볼때 소량에 불과한 실정이며, 수출에 있어서도 점차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 수출입 추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 추세에 비하여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수산부문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상과 같은 추세하에서 일시에 수산물 관세/비관세장벽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FTA의 체결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관리정책은 외국에 비하여 비교적 고관세 부과방법으로 수산물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즉, 수산물 수입 평균 관세면에서 우리나라는 일반관세 17.9%, 조정관세 14개 품목에 30~90%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에 의하여 일시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급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의 상대국은 수산물 생산대국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비하여 수산물 가격이 높고, 특히

대미국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수산물의 완전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셋째,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 우려된 바와 같이, FTA체결에 의하여 제3국산 수산물의 수출창구를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동남아, 남미등의 국가는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FTA 체결에 의하여 제3국의 수입창구 역할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재수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규정의 적절한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또는 앞으로 추진할 주변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FTA 협상시 수산부문에 대해서는 매우 치밀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 연안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선포에 따른 원양어업의 타격 등 우리나라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더욱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APEC, WTO 등 국제기구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한 수산물의 조기무역자유화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등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속에서 FTA 체결에 의하여 수산부문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산업 생산기반 약화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가, 국민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생산량은 감소함에 따라 수급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따라서 수산물 수입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산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양국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FTA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양국의 총효용뿐만 아니라 개별산업측면에서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고려한 균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표-54> FTA 추진 대상국가별 수산부문 예상 파급효과

대상국	파 급 효 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로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품목으로는 활돔, 활농어 등 고가어종 수입이 증가 전망 - 일본 수입제한 완화 또는 철폐되는 경우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수출 증가 예상 - 일본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과 다소의 순수출 증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어업협정 발효와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국제수지 측면 등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함 - 일본은 수산물 교역상 경쟁력이 일정유지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 - 일본의 평균관세가 낮아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무역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수입급증 예상품목에 대한 조절장치 강구와 일본의 IQ제도에 대한 대책 필요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교역의 경쟁력 비교에서 다소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쟁우위품목에는 어류(활어/신선/냉장/냉동), 갑각류(연체류), 어류(갑각류 : 조제/조림) - 미국은 경쟁력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나, 한국은 하락 추세에 있음. -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미국의 평균관세가 낮아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무역 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생산품목과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호품과는 차이가 있어 수출 및 수입품목으로 주로 가공품 및 냉동품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교역상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모든 부문에서 우위로 판단되나, 어류중 활어, 신선, 냉장·냉동부문에 한국과 경쟁력이 비슷하거나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경우, 경쟁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국은 하락하는 추세임 - 중국으로부터 국내수요가 많은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활선어의 수입급증 예상 - 중국은 냉동, 냉장, 활어수송 기술의 진전에 따라 국내시장 및 일본시장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대중국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수산물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수출촉진 정책과 병행하여 산지실명제 및 HACCP 등 위생, 품질관리방안을 강화하여 예상되는 수입증가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 필요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교역량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 가공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통한 제3국 수산물 유입가능성 대두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수산물 중심으로 수입증가 예상 - 멕시코를 기반으로 NAFTA 지역에 수산물 수출증대 예상
아세안 (10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새우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급증 예상 - 아세안국가의 싼 노동력으로 가격경쟁력 우위

자료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KMI

제2절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1.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진적 협상 추진

이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수산업이 안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수산업의 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TA 체결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전체적인 산업정책상 FTA 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시대적인 대세인 만큼 FTA 체결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수산부문에 대한 FTA의 점진적 추진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수출산업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3천여개의 도서와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촌지역의 지역발전 담당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산업의 영세성과 신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장상실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수산업의 생산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속에서 FTA 체결은 어업인의 피해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상대국가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가지는 지역적 및 국민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식품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수산물 수급측면에서만 아니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수산업은 비교열위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을 공산품과 같이 시장접근그룹으로 일괄하여 취급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포괄적 무역협정이라는 FTA 체결 방향을 감안할 경우, 자국에 불리한 민감산업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양국의 수산업이 가지는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한 점진적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단계별 관세인하 및 특혜관세 부과

수산부문에 대한 FTA 협상에 있어 점진적 추진 뿐만 아니라, 단계별 관세인하와 더 나아가 특혜관세부과방안도 FTA 추진에 있어 피해 최소화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세계의 수산업 세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업 세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수산물의 자급률 및 어업인의 자생력을 고려한 단계별 관세인하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계별 관세인하의 사례는 칠레가 이미 체결하고 있는 NAFTA, 칠레·캐나다 FTA 등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AFTA는 총교역품목의 98%를 자유화하였는데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1994년, 1998년, 2003년, 2008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⁴⁴⁾

이와 같이 FTA 체결의 경우에도 수산물 교역에서 적자를 상쇄 내지는 감소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수입이 많은 품목을 우선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자유화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다음으로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없더라도 주요 생산품으로 수입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여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자유화 이행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로부터 수입실적이 없으며 수입가능성도 거의 없는 품목은 초기단계에서 자유화 품목으로 선정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전체 수입순위와 APEC 및 WTO 자유화 논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

44) 칠레·캐나다 FTA(1997년 7월 5일 발효)는 양국간 교역품목의 약 80%가 협정 발효일로부터 무관세화되고, 과일, 채소, 신발, 밀, 식용유, 설탕, 토마토 등 나머지 민감품목은 3~18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칠레·페루 FTA(1998년 6월 타결)는 페루산 제품의 약 60% 산, 칠레산 제품의 약 40%가 협정발효일로부터 무관세화되고, 교역품목의 20%는 3~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인하하고, 나머지품목은 6~18년간 단계적으로 관세인하하기로 하였다.

여 민감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위한 정책판단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민감품목, 수산업 세력, 다른 수산물 수출입 국가와의 관계 등 보다 복합적인 변수에 의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HS 품목분류에 따른 영향 및 업종별 영향 등과 향후의 수산정책과 연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및 수산물의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 관세철폐 대신 일정 수준의 특혜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각 품목(공산품, 농산품, 수산물등)간 평균관세율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이중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수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특혜의 폭은 FTA체결상대국에게 적절한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2. FTA 체결 피해 대처방안과 적극적 활용방안

1)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저감대책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화 또는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려될 수 있는 장치는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규정, SPS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양국간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FTA 발효후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수산업의 피해발생시 관세율을 일정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자간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상 무역자유화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NAFTA, 칠레·캐나다 FTA 등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⁴⁵⁾

예를 들면, 칠레·멕시코 FTA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경과기간 동안 자유무역협정상 규정된 관세철폐나 인하의 결과로 한 체약국의 원산지 재화가 상대 체약국으로 대량수입되어, 유사재화 또는 직접 경쟁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계에 중대한 손해 또는 손해에 대한 위협을 야기할 경우에 수입 체약국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손해나 손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제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당재화에 대해 규정된 모든 관세율의 차후 인하를 중지하고, 관세율을 인상하는 당시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 본 협정 발효일 이전에 적용된 최혜국 관세 등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당 재화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원산지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협정상대국으로 하여금 제3국의 수출창구 역할을 모니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FTA, EFTA, 남미국가 등 우리나라가 FTA체결을 추진, 검토하고 있는 나라중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수산물의 생산과 수출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각국은 간접수출을 통한 무역확대를 피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증가하는 수산물 수입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검사 및 검역조치의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산물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국가의 전체적인 산업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원재료와 수출시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추진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세계적 대세인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시점에서 수산부문 또한 그

45) NAFTA의 양자간 셰이프가드 조치 : NAFTA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내지 철폐로 인한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인하 중지 및 최혜국관세율(MFN)까지 관세인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기간(협정발효후 10년간)에 한해 가능하며,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예외적인 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간의 보호주의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수산부문에 대한 국가간 협력 가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무한경쟁의 국제무역 관계속에서 협력과 분업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생산차원에서 수산물 가공 및 유통과 제3국 무역이라는 차원으로 양국의 수산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기술과 자본, 낮은 임금의 노동력 등이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⁴⁶⁾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수산업 측면에서 FTA 추진은 단기적인 경제효과보다는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의 공유 및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호혜적 협력모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FTA 체제하의 수산물 관세체계의 개편

1) 관세 체계의 다단계화

WTO 뉴라운드 및 FTA 확산에 따라 현행 수산물무역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물 관세체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일률적이고 단순한 현행 관세체계를 수산물의 품목별 경쟁력과 어업별 발전수준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다단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입개방에 의한 국내 수산업의 피해도와 자급률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대상 수산물을 무세화품목, 고관세품목, 저관세품목으로 구분하고, 적용 관세율도 소수점까지 활용함으로써, 수입개방의 확대에

46) 수산업 협력범위를 생산에서 유통·가공·무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다차산업(1, 2, 3차산업)을 시야에 넣고, 생산진진기로서 뿐만 아니라 다차산업 네트워크의 중핵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수입수산물의 관리를 위해 수산가공원료 중 국내공급이 거의 불가능한 비경쟁원료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최저세율로 인하하여 국내 수산가공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고차 수산가공품에 대하여는 국내 가공수산업이 교역상대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출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의 경우 252개 품목중 2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들이 10%와 20%라는 2단계의 균등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류(HS 03류)의 기본관세율구조는 어종별·품목별·수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에 대한 조정관세위주의 관세정책은 통상마찰과 교역상대국의 보복관세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잠정세율, 탄력관세율 등 실행관세율이 기본세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품목의 경우는 기본관세로 단일화하여 잠정관세와 조정관세를 최소화하고, 기본관세율을 품목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귀, 쾡치, 문어, 굴비, 새우, 갈치, 멸치, 전복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목에 대하여는 차등관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물 관세율의 개정에는 수산물의 수급동향과 소비자의 선호도, 국내수산업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수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하고, 민감품목임에도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세 부과방법의 다양화

수산물의 수입억제와 국내수산업 보호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종량 증가병과세(미국), TQ제도(EU), IQ제도(일본), 품목별차등관세제도(중국)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관세율과 증가세위주의 관세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시장개방의 국제무역환경속에서 수

산부문의 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대응이 어렵게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저가 수산물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수산업의 보호와 생계형 어업인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량세의 확대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량세와 증가세중 높은 세액(일부는 낮은 세액)을 부과하는 증가종량선택세나 증가종량복합세 또는 병과세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종량세와 증가세중 높은 세액(일부 품목은 낮은 세액)을 선택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함으로써 증가세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과세가격이 높은 활어의 경우는 증가세가, 저가 수입수산물의 경우는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제도를 통한 국내수산업의 보호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된다.

수입수산물로부터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현행 관세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저가 수입수산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와 긴급관세, 할당관세가 있으나, 덤핑방지관세와 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당관세제도는 수입국이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미 설정한 일정량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취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제한조치로서 관세와 수입수량할당제가 개별적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하여 마련된 무역제한조치이다.

이 제도는 EU국가에 의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세할당제도는 순수한 관세나 수입수량할당제보다 덜 수입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무역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고,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와 유사하여 세계각국에 의하여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수준의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동시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산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 수입되는 수량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 양식품목으로 유치단계에 있으나 잠재수요가 대단히 큰 동해안의 비단가리비 등에 대하여 국내산업이 수입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할당관세제도는 관세와 수입수량할당제의 기술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입수량할당제(IQ)와 마찬가지로 수입수량할당량의 결정문제와 수입수량할당제의 수혜대상 결정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는 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등 난점도 있다.

수산물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탄력관세제도는 계절관세인데, 이 관세제도의 활용은 지금까지 어업관계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요구되어 온 것이다. 수산물도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라 수출입되는 어종, 품목, 수량이 다르고, 소비자의 선호도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민감품목을 선정하여 계절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4. 수산물 직접지불제를 통한 어업인 지원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란, 농수산업에 대한 보조방식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로서 한마디로 정부가 생산자에 대해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조성 등과 같이 지원효과가 간접적이거나 집단적이 아니고 특정그룹의 농어가 개개인에 대한 소득보조를 가리킨다. 이런 점에서 직접지불제는 허용보조금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허용보조금 자체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직접지불제는 과거부터 농업부문에서 주로 시행해 왔으나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OECD에서 가격지지 중심의 과거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검토되었고, 이것이 우루과이 라운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에서 시장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가격정책 등의 보조를 감축시키는 대신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직접지불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직접지불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특정 품목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직접지불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에서도 직접지불제는 농업에 대한 기존 보조의 감축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농업정책이 지나치게 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농민의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수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농업보호의 감축 내지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접지불제는 농수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가 아니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조감축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방식의 전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예를 보면 어업, 어촌부문에 대한 시행사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농촌,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생산조정에 관한 반대급부와 소득안정, 환경보전,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 및 경영이양의 촉진 등의 부문에 적극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표-55> 외국의 농업부문 직접지불제 시행사례

구분	EU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품목별 보상제	보상지불제	생산중립적 직접지불로 전환	-	생산조정제	환경정책과 연계하여 시행
소득안정화	-	-	순소득안정화 작물보험	-	-
조건불리지역 지원	조건불리지역 농업지원	-	-	-	산간지역농업 지원
환경농업 지원	환경친화농업, 야생동물보호, 조림지원 등	습지보전계획, 환경개선 장려	-	지자체에서 시행	유기농업, 통합적농업, 가축보호
이탈농 지원	조기은퇴 지원	-	-	경영이양연금	-

자료 : 농림부, KMI

한편,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그 동안 직접지불제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와 유사한 관련법인에 대한 보조와 저리용자 이자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환경농어업, 조건불리지역 지원, 농수산물 보험 등 선진국형의 직접지불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거나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 직접지불제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로서 동 협상의 타결 1년 후인 1995년 1월에 법률 제4858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세, 재해, 생산 아닌 보조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산부문에 있어 직접지불제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WTO, OECD, APEC 등과 각종 국제기구로부터 관세 및 보조금 철폐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 환경 및 국토보전과 같은 어업, 어촌의 다면적 기능이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음에 대한 보완정책으로서 필요하며, 셋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소외되고 있는 영세 어업인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재 논의 중인 WTO 뉴라운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EU,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위한 걸림들은 전혀 없으며, 다만 어업인이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및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수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세계무역환경의 변화는 일반적 공산품뿐만 아니라 1차산업인 농산물, 수산물 등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산업에도 그에 따른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더욱이, WTO체제상 수산보조금 문제와 FTA의 급격한 확산으로 비회원국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이 형

성될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1차산업같은 경우, 국제경쟁상 열위에 속하는 산업인 경우가 많다. 수산업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개방의 국제무역 환경속에서는 일정기간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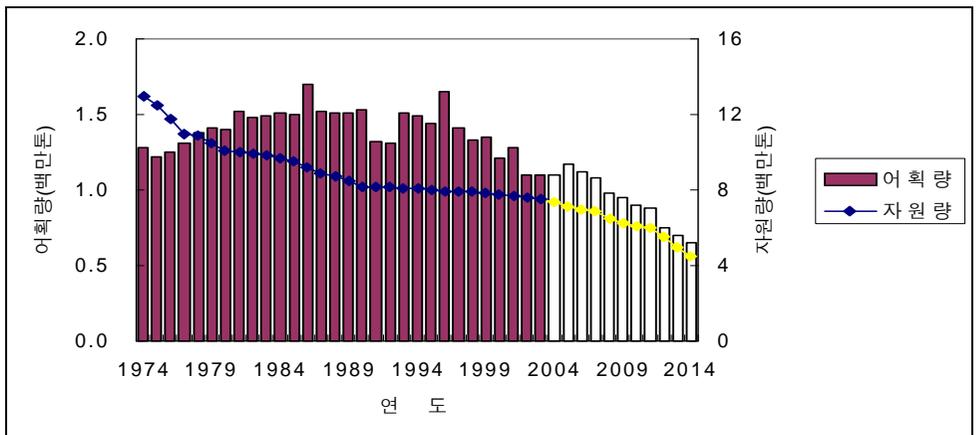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고의 방책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는 낙후되거나, 경쟁력이 약한 수산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또한 포함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최단시간에 마련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수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

어선어업의 경우,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 어선 척수는 계속 증가하여 왔고, 어선의 성능 역시 대형화와 동력화로 크게 개선되어 어획노력량 투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과도한 어획과 생태계 파괴문제, 점증하는 어획강도 문제,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 시장개방에 따른 중국 등의 외국 수산물 과다 유입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그림-03> 연근해어업 생산량 및 자원량지수 변화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관련 자료

이에 따라 어획물의 성어자원이 급감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자율갱신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자원연구기관에서는 구조조정없이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10년후 자원량은 현 수준의 40%로 감소하고,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66만톤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어업인들간의 자원선점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소위 ‘공유재의 비극’이 우려되며, 업종간, 어업간 분쟁, 조업해역간의 문제 등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선어업의 조업여건이 곤란에 처해 있는 가운데, WTO/DDA 협정으로 인한 수산보조금에 대한 감축압력과 FTA 협정으로 인한 수입수산물의 증가 등으로 기존의 국내 어업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식어업의 경우, 과잉시설 및 밀식 등에 따라 국내 양식어업의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1997년말 수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서, 국내 양식어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국내산 양식 수산물중 경쟁력이 있는 품종으로는 넙치, 굴, 해조류, 복어 등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과잉생산 및 수입급증으로 주요 양식품종의 가격이 오랫동안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활어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양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의 수산물 수입급증으로 국내 양식업 또한 생존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무역환경을 구조조정을 통한 집중과 선택의 경쟁원리에 의거 재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어업구조조정 의의와 수단

어업의 구조조정이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어업에 대해 어획노력량 투입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구규모 축소 등 실질적으로 어획노력을 감축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어업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투입되는 어획노력량을 조정하는 정책수단에는 규제에 의해 어획노력량의 투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수단과 어선별 혹은 어업자원별 어획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어업자가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어획노력량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직접적인 수단으로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유형으로서 어선감척, 어구규제, 조업시간 규제,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단이 어선감척이라고 할 수 있다.

간접적인 수단으로서는 경제적 유인에 의해 어업자가 스스로 주어진 여건에 맞도록 어획노력량 수준을 감축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수단으로서는 개별어선어획할당제도(IVQ: Individual Vessel Quota)와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도(ITQ: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를 들 수 있는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도(ITQ)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표-56> 수산업 구조조정 수단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사 례	장 점	단 점
직접적 수단	-어선감척 -휴어제 -어구사용 규제 -조업시간 규제 -TAC제도(총량관리)	-전통적 어업관리방식과의 접목 용이 -어선감척의 경우, 생산의 중심수단을 영구적으로 폐기	-어업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힘들
간접적 수단	-ITQ, -IVQ	-어획량에 대한 직접적 규제로 자원보호 용이 및 자원 렌트 보장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 적음	-공유자원에 대한 사적권리 부여로 전통적 어업관리체제와 부합하지 않음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 -어획물의 선상폐기율의 증가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관련 자료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악화 및 대외 여건의 변화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WTO/DDA 및 FTA 협상에 따라서는 국내 연근해어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산자원의 회복을 바탕으로 어업의 내재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어선감척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TAC 제도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적 구조조정 수단의 갑작스런 도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에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직접적 수단을 중심으로 근해의 어선감척, 연안의 휴어제, 사용어구의 규모 규제 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식어업의 경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우위품목을 중심으로 한 생산시설을 적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어장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어장의 정비 및 환경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양식어업에 대한 법제정비, 허가, 면허, 신고어업에 대한 정비, 어장 및 양식시설에 대한 정비 및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선감척에 있어서는 그동안 상당수의 연근해 어선을 감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선세력은 적정 어획강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어선감척과 선행하거나 병행해야 할 관련사업의 추진이 미흡하여 어선감척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점과 감척보상에 따르는 민원을 해소하고 비용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근해어업의 감척에 있어서도 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선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휴어가를 정비하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 업종별 조업어장의 재편이 필요하다.

6. 연근해 휴어제 추진

어선감척사업의 효과전망을 바탕으로 할 때, 어업자원 회복 및 어업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근해 어선세력의 30% 이상을 감척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어업인의 과도한 퇴출은 불법어업의 증가, 연

안어촌의 정주력 훼손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척사업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어선의 감척규모를 줄이는 대신, 어업자원이 회복되는 시기까지 한정하여 업종별로 휴어기간을 정하여 휴어기간에 상실되는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휴어제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하여는 소득상실의 일부분에 대하여 직접지불제 형태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원수준 및 어업경영 여건에 따라 어업인 참여정도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연구용역을 거쳐 시범사업 시행후 본격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근해 휴어제 추진은 어장관리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중의 하나라고 판단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어업인의 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의 취지에서와 같이 어업인의 자율적 관리와 참여에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표-57> 휴어제 도입시 고려사항

구 분	고 려 사 항
도입가능성	-WTO 규정에 대한 합치성 -정치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입 가능성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의 합리성 -지원 상한선 및 하한선의 설정 -대상지역 및 대상어종 선정의 적합성
지원조건	-지원수준 및 지원조건의 결정 -지원금액 산정 및 산정방법의 타당성
역할분담	-집행주체의 결정(중앙 및 지방정부, 어촌계, 수협 등) -모니터링 방식 및 제재수단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관련 자료

7. 수산업 대상 특혜무역협정의 추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대국과의 교역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국가간의 전 분야 경제협력이 용이하지 않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 부문별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어느 특정산업을 통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특혜무역협정(sectoral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은 협정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협정 당사국들간에 상호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의 상품들에 대하여 협정국들간에는 낮은 관세나 비관세장벽 특혜를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협정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되고 있는 유럽연합은 석탄 및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모태로 하여 현재의 통합을 이루어냈으며,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과 체결하여 발전한 NAFTA는 좋은 사례인데, 즉 1년 파리조약 (Treaty of Paris)에 의해 결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등의 6국간에 체결된 최초의 기능주의 통합의 길을 연 기구이다.

이는 전후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석탄·철강의 공동관리를 통한 효율적 성장의 도모라는 표면적 가치를 내세우며 출범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철강재 수출입에 부과된 각국의 보조금 정책, 제한적인 수입 조치 등의 폐지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동북아, 특히 한·중·일 3국간에도 먼저 상호의 존성이 높고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파급효과가 큰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통합을 시작하여 그 성과를 토대로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며 대상산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산업이

고려될 수 있으나 3국간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가 선정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중·일 3국의 수산업은 이미 교역과 투자 그리고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수산해당부문에 대한 대책을 예 있어서는 한·중·일 3국이 역외국가보다 더욱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역외국보다 3국내로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의 문제중의 하나인 경제의 종속성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 제휴와 적극적인 기술개발의 노력을 통해 3국간의 역내기술 격차를 축소시키고 있어 통합에 따른 경제 종속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현재까지 지역무역협정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의 귀감이 되는 유럽연합의 시발점임을 생각해 볼 때 한·중·일 수산부문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여타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한·중·일 3국간에 미래지향적인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대국민 홍보와 이해관계 어업인 대책

우선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한·칠레 FTA 체결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협상과정의 시행착오와 지리한 논쟁으로 국력의 소모와 국론의 분열 그리고 시간을 허송했던 뼈아픈 시행착오를 다시는 격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는데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협상전략과 협상내용의 수립에 충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진행과정별 협상내용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의 불신을 일소하고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측면에서 한·칠레 FTA 체결과

1년의 성적은 우리나라 국민모두가 FTA를 재인식하는 체험적이고 실증적인 좋은 홍보의 재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 어업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업이나 생계수단을 마련하는데 국가가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칠레 FT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성없는 과도한 보상과 보상을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이 난무하게 해서는 물론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인 한·칠레 FTA 1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FTA 추진의 당위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다같이 공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제 8 장 결 론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 일국의 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축소경향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대상으로 그 영향을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선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FTA에 대하여 선행적 연구와 관련 문헌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계무역환경은 GATT체제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주의의 WTO체제와 도하개발아젠다, 양자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FTA의 확산의 배경과 현황, 앞으로의 추이, WTO와의 관계 등을 고찰함으로써 현재의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중에서 1차산업의 특정한 부문인 수산부문에 한정하여 FTA 체결에 따르는 영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FTA 체결 및 체결을 위해 추진중인 협상의 협정과정, 협상전략과 협상내용을 수집분석하여 FTA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 자체가 취약산업이면서, 산업 세력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산업이므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 수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FTA 상대국을 선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산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국가와의 FTA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적정규모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선어업 및 양식업에 대해서도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측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의 경쟁력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차별화 노력 또한 부단히 하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FTA 체결에 의한 소비자 잉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이와 같은 후생증가가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오히려 후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발생하는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의 대책수립이 요청된다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일본에 대해서만 대체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일간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신어업협정의 발효와 이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에 의하여 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양국간 FTA 체결이 고용, 국제수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관세에 비해 수산선진국이나 수산대국 등의 경우에 수산물에 대한 평균관세가 매우 낮아 FTA를 체결하더라도 수출증가라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무역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협정 대상국 선정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고, 산업전반에 걸쳐 이익을 점할 수 있으나 수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될 경우는 관세정책과 비관세 정책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주요 논의사항과 연계한 협상의 진행으로 최대한 국내 수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업종별 사전 영향분석을 통하여, 상대국에 비해 협상 테이블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많은 협상카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의 경우, FTA 이행 이후 수산물 수입의 급증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학술지>

- 주문배 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2003. 3
홍성걸 외, 한·중 수산협력에 관한 연구, 2001. 12
심기섭 외, 한·칠레 FTA 추진에 따른 수산부문영향과 대응방안, 1999.12
주문배 외, WTO뉴라운드 대비 수산물 HS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
김현용, 한·중 FTA 관련 어업별 영향 및 대응방안, 2005
주문배 외, 한·중·일 수산업 경쟁력 분석과 시장개방 대응방안, 2004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종합발전대책 수립(2001~2005)
한국관세사무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 200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KOTIS).
한국수산회, 수산연감, 각 년도.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2004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2004), 2004.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년도.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입통계연보, 각년도.
해양수산부, 수산물 시장접근 협상대응 수산물 민감도분석에 관한 연구, 2003.12.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각년도.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년도.
해양수산부, 한·일 FTA관련 수산물 민감도 분석, 2003.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각년도.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2001.
* FTO,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 2001.

日本貿易振興會中南美チム, 「産業競争力強化の現状と課題チリ」, 日本貿易振興會海外經濟情報センタ, 1997.

日刊「水産經濟新聞」, 1999. 6.

Banco Central de Chile, Economic and Financial Report, 1998. 7.

Bruce. R. Scott, US Competitiveness: Concepts, Performance and Implication, US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Economy.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1996.